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468호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        |       |
|--------|-------|
| 선<br>람 | 기관의 장 |
|        |       |

## 공 고

|               |             |                                                   |    |
|---------------|-------------|---------------------------------------------------|----|
| ○ 공           | 고 제 5 8 7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
| ○ 공           | 고 제 5 8 8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5 |
| ○ 공           | 고 제 5 9 7 호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25 |
| ○ 공           | 고 제 6 0 5 호 | 남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공고                          | 27 |
| ○ 공           | 고 제 6 1 4 호 | 2018년 재난관리실태 공시                                   | 31 |
| ○ 공           | 고 제 6 1 6 호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 74 |
| ○ 보 건 소 공 고 제 | 3 4 호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77 |

## 고 시

|     |           |                 |    |
|-----|-----------|-----------------|----|
| ○ 고 | 시 제 4 1 호 |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 79 |
| ○ 고 | 시 제 4 2 호 |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 80 |
| ○ 고 | 시 제 4 3 호 |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 81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587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3. 25.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의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취지를 살리고자 지급조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 정비 및 지급조건 제한(안 제6조, 제7조)
-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안 제8조)
-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상위법에 맞게 정비, 포상금 지급액 현실화(별표)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592, FAX 453-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입법예고)

#### 5. 개정규칙(안) : 별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 제안이유

-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의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취지를 살리고자 지급조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 정비 및 지급조건 제한(안 제6조, 제7조)
-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안 제8조)
-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상위법에 맞게 정비, 포상금 지급액 현실화(별표)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 참고자료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6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49조

남동구 조례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19세에 도달하는”을 “19세가 되는”으로, “자를”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시정명령을 제외한 행정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를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민간단체(법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포상금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 중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를 “기”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청소년</u>”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p> <p>2. “<u>청소년유해환경</u>”이라 함은 <u>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u></p> <p>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u>시정명령을 제외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u>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p> | <p>제2조(정의) -----<br/>-----<br/>-.</p> <p>1. “<u>청소년</u>”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19세가 되는 -----<br/>- 사람은 -----.</p> <p>2. “<u>청소년유해환경</u>”이란 <u>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u></p> <p>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br/>-----<br/>-----<br/>----- <u>행정처분</u> -----<br/>-----<br/>-----<br/>-----.</p>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인에 대한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횟수가 5회를 초과할 경우

<신설>

<신설>

제7조(지급) ①·② (생략)

<신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민간단체(법인) --

3.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4.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포상금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환수) -----  
-----  
-----  
----- 기 -----  
-----  
-----.

## [별표]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대상 위반행위                                                                                       | 지 급 액                    |
|-------------------------------------------------------------------------------------------------|--------------------------|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                                 | 제조업자 20만원<br>유통·판매업자 5만원 |
| 법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 10만원                     |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 20만원                     |
|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10만원                     |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6) 및 (7)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              | 5만원                      |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                                   | 5만원                      |
|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 10만원                     |
|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10만원                     |
|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 10만원                     |
|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중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3만원                      |

## [별표]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대상 위반행위                                                                                                    | 지급액                     |
|--------------------------------------------------------------------------------------------------------------|-------------------------|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 제조업자 5만원<br>유통·판매업자 3만원 |
|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 5만원                     |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5만원                     |
|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5만원                     |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5만원                     |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5만원                     |
|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경우                                                   | 5만원                     |
|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 5만원                     |
|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5만원                     |
|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도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5만원                     |
|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5만원                     |
|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 5만원                     |
|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경우                                                         | 5만원                     |
|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                                                                             | 5만원                     |
|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3만원                     |

## - 참 고 자 료 -

### □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

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588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3. 25.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상위법을 인용함 (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 수당지급기준 명문화(안 제10조)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592, FAX 453-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http://www.namdong.go.kr/입법예고))

#### 5. 개정규칙(안) : 별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상위법을 인용함 (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 수당지급기준 명문화(안 제 10조)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 참고자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 「2019년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남동구 조례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제3조제1항 중 “10명 이내”를 “15명 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동부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남동경찰서”를 “경찰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남동구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제3조제3항제9호 중 “장”을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 11.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제3조제5항 중 “평생교육지원과 장”을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p> <p>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p> <p>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p> <p>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p> <p>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p> <p>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p> | <p>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p> <p>제3조(구성) ① -----<br/>-----<br/>---- 15명 내외-----</p> |

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3. (생략)

4. 동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남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생략)

7.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8. (생략)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신설>

<신설>

④ (생략)

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지

-----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

③ -----  
-----.

1.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 3. (현행과 같음)

4. 교육지원청-----  
-----

5. 경찰서-----  
-----

6. (현행과 같음)

7. 남동구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8. (현행과 같음)

9. -----  
-----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10.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11.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④ (현행과 같음)

⑤ -----  
----- 청소년

원과 장이 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생략)

업무 담당-----.

제10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  
-----  
-----.  
-----  
-----  
-----.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 - 참 고 자 료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8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5장 청소년 복지사업 / II.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 2. CYS-Net 구성

##### 나. CYS-Net 운영위원회

##### 2) 구성 및 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 위원장(자치단체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위촉 위원 중 1인을 호선)을 각 1인으로 하며, 사무처리를 위해 자치단체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음
  - 위원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당연직), 시·도 및 지역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당연직),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당연직),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으로 대체 가능), 비행예방센터의 장,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각 1인으로 구성함.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597호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오9520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3.26.(화) ~ 4.10.(수)
3. 내 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3.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3월분) 공시송달내역

| 순번 | 차량번호    | 성명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위반항목                  | 우편번호  | 주소                                        |
|----|---------|-----|------------|------|-----------------------|-------|-------------------------------------------|
| 1  | **오9520 | 손*왕 | 2019-03-25 | 기타   | 안전기준위반(불법등화:리플렉터 LED) | 2154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동<br>***호 (구월동, **빌라)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605호

**남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앱」 및 「생활불편신고앱」 개선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안전신문고앱」과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하여 제보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3. 26.(화) ~ 2019. 4. 16.(화) (21일간)****4. 시 행 일: 2019. 4. 17.(수)****5. 공고장소 : 남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amdong.go.kr)**

## 6. 주민신고제 운영

## 가. 신고대상

| 구 분          |                | 내 용                                                                               |
|--------------|----------------|-----------------------------------------------------------------------------------|
| 신고대상         |                |                                                                                   |
| 안 전<br>신 문 고 | 소방시설<br>주 변    |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br>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br>* 주차금지 표지와 소화전 시설물이 사진에 포함         |
|              | 교 차 로<br>모 통 이 |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br>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br>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
|              | 버 스<br>정류장     |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br>이내정지 상태 차량                                         |
|              | 횡단보도           |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생활불편<br>신고   |                | · 도로교통법 32조 3, 7항 및 시행령 별표#7<br>에서 정하는 주정차 금지구역<br>* 안전지대, 황색실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

## 나. 신고시간 적용

## 1) 생활불편신고앱 신고대상차량

가) 평일 : 07:00 ~ 22:00

나) 주말/공휴일 : 09:30 ~ 17:30

\* 가), 나)항 모두 점심시간 유예적용 : 12:00~14:00

## 2) 안전신문고앱 신고대상차량 : 24시간 \* 평일,주말(공휴일) 구분없음

다.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  
\* 동영상 제외 : 앱과 차량 블랙박스 등 기타 전자기기로 촬영한 영상
-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라.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 40,000원 부터

다만, 소방시설 5m 이내 8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4. 17. 예정)

마. 기타사항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1인 3회 이상 시 과태료 비부과 종결

바. 신고포상제도: 없음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공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32-453-2899)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붙임)

마. 제출기한 : 2019. 4. 10. (월)

바. 문의사항 : 남동구 교통행정과 주차민원팀 (032-453-519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614호

##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9. 3.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는 남동산단 화재로 인명피해 15명[사망9명, 부상 6명(중상2, 경상4)], 물적피해(사유재산) 220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구분하자면 2018년 발생한 화재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복구 및 피해자 보상절차 등은 원인자 등에 의해 완료되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20개 (실)과 329명으로 5년 평균보다 149명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7명 감소하였습니다, 재난안전분야의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하여 자치행정국 내 안전총괄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자연재난팀과 사회재난팀을 통합하여 재난관리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재해문자 전광판 등 7종으로 총 48개소에 설치되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5년 평균 33개소 보다 15개소가 증가, 이는 산불감시카메라1개소 및 민방위 경보시설(사이렌)추가 설치로 인하여 다소 증가하여 2018년말 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14개소 증가하였고,
  - 방재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관련 분야 15개 교육과정을 42명이 이수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2명과 지역주민 연75회 4,439명은 재난관리 예방교육(심폐소생술체험 등)훈련을 받았습니다.

- 재난·안전문화 홍보를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과, 산불예방 캠페인, 다중시설의 안전대비태세 점검에 대하여 지역 언론과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 신속한 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전관리정책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11개의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재난방지시설에 대하여서는 9천1백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관내 하수도시설, 공동구,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간석동 산34-9번지 일원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83억 9천 5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하천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오일웬스 등 7종의 환경방재 물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711개소의 의료시설, 학교·관공서, 경로당 등 44개소의 수용시설이 있으며 16,287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복구장비는 굴삭기·크레인·청소차 등 55대를, 산불진화장비는 산불진화차·펌프 등 466개를, 기타장비로는 양수기 등 73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은 건축·토목 등 35명을, 기능인력은 전기, 기계 등 92명이 있고, 의용소방대, 적십자봉사대 등 106.036명이 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1,120백만원이며 1,120백만원 확보되어 100 %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916백만원 보다 204백만원 증가(감소)하였고, 지난해 보다 46백만원 증가(감소)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244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75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61백만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산불, 감염병 등 18종의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작성·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뉴얼에 의거 2018.04.04. 소래논현지구에서 공동구 화재사고 등을 가정한 현장훈련을 실시하였고, 2018.04.25. 유류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을 가정한 현장 숙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8.11.06. 산불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2등급으로 안전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2등급 감소하였습니다.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90개시설 중 63시설이 내진 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70%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금년도의 공공시설물(교량) 내진보강은 3건 124백만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건/124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지난해 보다 3건 12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구의 재난관리역량에 있어 풍수해(태풍, 호우 등)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추진실적은 우수하나, 지진해일 관련 예방 및 대비 시스템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 일시   | 재난(피해) 원인 | 피해내용                                                                          | 복구내용                        | 추진사항                                                   |
|------|-----------|-------------------------------------------------------------------------------|-----------------------------|--------------------------------------------------------|
| 8.21 | 화재        | - 세일전자 공장 화재<br>· 인명피해 15명<br>: 사망 9명, 부상 6명<br>(중상2, 경상4)<br>· 재산피해 : 220백만원 | - 사유시설로 소유자 자력복구 및 원인자 피해보상 |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br>2018. 8. 22. ~ 2018. 8. 31. |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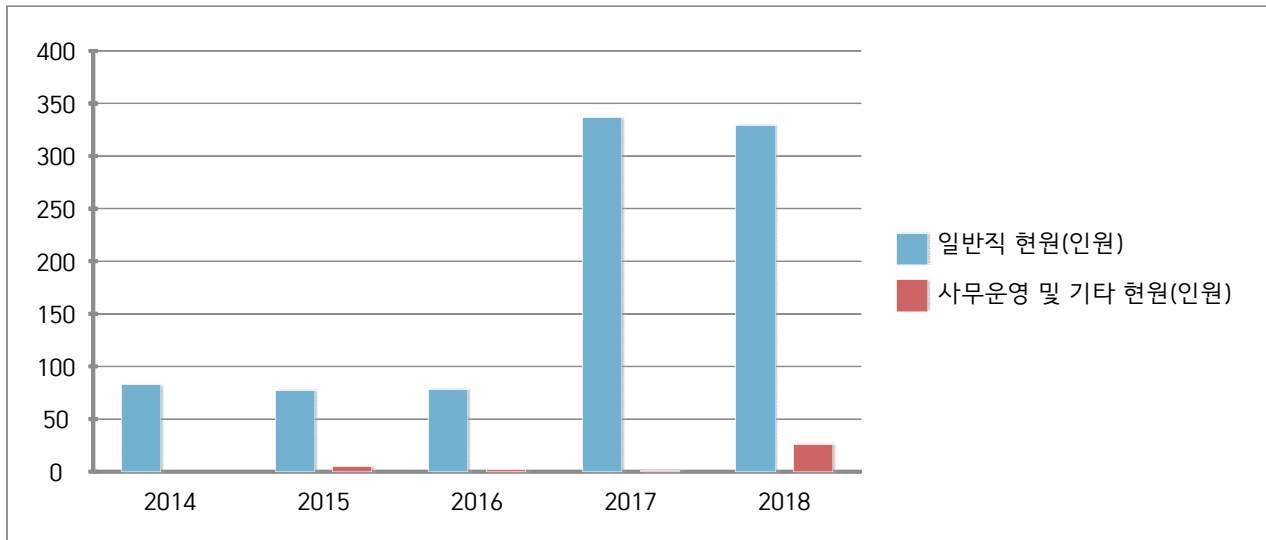


## 나. 정원

| 과 별         |    | 계   | 일 반 직 |    |    |    |     |     |    | 사무<br>운영 | 기타 |
|-------------|----|-----|-------|----|----|----|-----|-----|----|----------|----|
|             |    |     | 소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계           | 정원 | 411 | 385   | 4  | 23 | 95 | 144 | 100 | 19 | 2        | 24 |
|             | 현원 | 358 | 329   | 4  | 23 | 90 | 148 | 55  | 8  |          | 30 |
| 안 전<br>총괄과  | 정원 | 21  | 21    | -  | 1  | 4  | 6   | 6   | 4  | -        |    |
|             | 현원 | 17  | 17    | -  | 1  | 4  | 9   | 3   | -  | -        |    |
| 환 경<br>보전과  | 정원 | 21  | 21    | -  | 1  | 7  | 11  | 2   | -  | -        | -  |
|             | 현원 | 20  | 16    | -  | 1  | 5  | 6   | 4   | -  | -        | 4  |
| 건설과         | 정원 | 32  | 32    | 1  | 1  | 7  | 12  | 7   | 4  |          |    |
|             | 현원 | 29  | 29    | 1  | 1  | 7  | 12  | 5   | 3  |          |    |
| 공 원<br>녹지과  | 정원 | 20  | 20    |    | 1  | 5  | 8   | 5   | 1  |          |    |
|             | 현원 | 17  | 17    |    | 1  | 5  | 6   | 5   |    |          |    |
| 홍보<br>미디어실  | 정원 | 18  | 18    |    | 1  | 4  | 8   | 5   |    |          |    |
|             | 현원 | 14  | 14    |    | 1  | 4  | 6   | 2   | 1  |          |    |
| 문화관광<br>체육과 | 정원 | 15  | 15    | -  | 1  | 4  | 6   | 3   | 1  | -        | -  |
|             | 현원 | 13  | 12    | -  | 1  | 4  | 6   | 1   | -  | -        | 1  |
| 농축<br>수산과   | 정원 | 15  | 15    | -  | 1  | 3  | 7   | 4   | -  | -        | -  |
|             | 현원 | 13  | 13    | -  | 1  | 3  | 5   | 3   | 1  | -        | -  |
| 건축과         | 정원 | 15  | 15    | -  | 1  | 4  | 5   | 4   | 1  | -        |    |
|             | 현원 | 13  | 13    | -  | 1  | 3  | 8   | -   | 1  | -        |    |
| 청소과         | 정원 | 16  | 16    | -  | 1  | 5  | 5   | 5   | -  | -        |    |
|             | 현원 | 15  | 15    | -  | 1  | 6  | 6   | 2   | -  | -        |    |
| 재무과         | 정원 | 27  | 27    | 1  | 1  | 7  | 13  | 5   | -  | -        | -  |
|             | 현원 | 24  | 24    | 1  | 1  | 5  | 13  | 4   | -  | -        | -  |
| 기업<br>지원과   | 정원 | 13  | 13    |    | 1  | 4  | 5   | 2   | 1  |          |    |
|             | 현원 | 11  | 11    |    | 1  | 4  | 3   | 2   | 1  |          |    |
| 생활<br>경제과   | 정원 | 17  | 14    | -  | 1  | 4  | 4   | 4   | 1  | -        | 3  |
|             | 현원 | 16  | 13    | -  | 1  | 3  | 5   | 4   | -  | -        | 3  |
| 복지<br>정책과   | 정원 | 18  | 18    | 1  | 1  | 5  | 5   | 6   |    |          |    |
|             | 현원 | 17  | 17    | 1  | 1  | 5  | 10  |     |    |          |    |
| 가정<br>복지과   | 정원 | 14  | 14    | -  | 1  | 4  | 4   | 4   | 1  | -        |    |
|             | 현원 | 13  | 13    | -  | 1  | 4  | 6   | 2   | -  | -        |    |
| 보육<br>정책과   | 정원 | 15  | 15    | -  | 1  | 4  | 5   | 5   | 0  | -        |    |
|             | 현원 | 14  | 14    | -  | 1  | 3  | 6   | 3   | 0  | -        | 1  |
| 교통<br>행정과   | 정원 | 15  | 15    |    | 1  | 3  | 7   | 4   |    |          |    |
|             | 현원 | 14  | 14    |    | 1  | 5  | 6   | 2   |    |          |    |
| 자동차<br>관리과  | 정원 | 24  | 21    | 0  | 1  | 4  | 5   | 8   | 3  | 2        | 1  |
|             | 현원 | 21  | 20    | 0  | 1  | 6  | 8   | 5   | -  |          | 1  |
| 보건<br>행정과   | 정원 | 30  | 28    | 1  | 2  | 7  | 14  | 3   | 1  | 0        | 2  |
|             | 현원 | 24  | 22    | 1  | 2  | 4  | 14  | 1   | 0  | 0        | 2  |
| 건강<br>증진과   | 정원 | 45  | 27    | -  | 3  | 6  | 8   | 9   | 1  |          | 18 |
|             | 현원 | 36  | 18    | -  | 3  | 5  | 7   | 2   | 1  |          | 18 |
| 식품<br>위생과   | 정원 | 20  | 20    |    | 1  | 4  | 6   | 9   |    |          |    |
|             | 현원 | 17  | 17    |    | 1  | 5  | 6   | 5   |    |          |    |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일반직 현원(인원)          | 82   | 77   | 78   | 336  | 329  |
| 사무운영 및 기타<br>현원(인원) | 0    | 5    | 2    | 1    | 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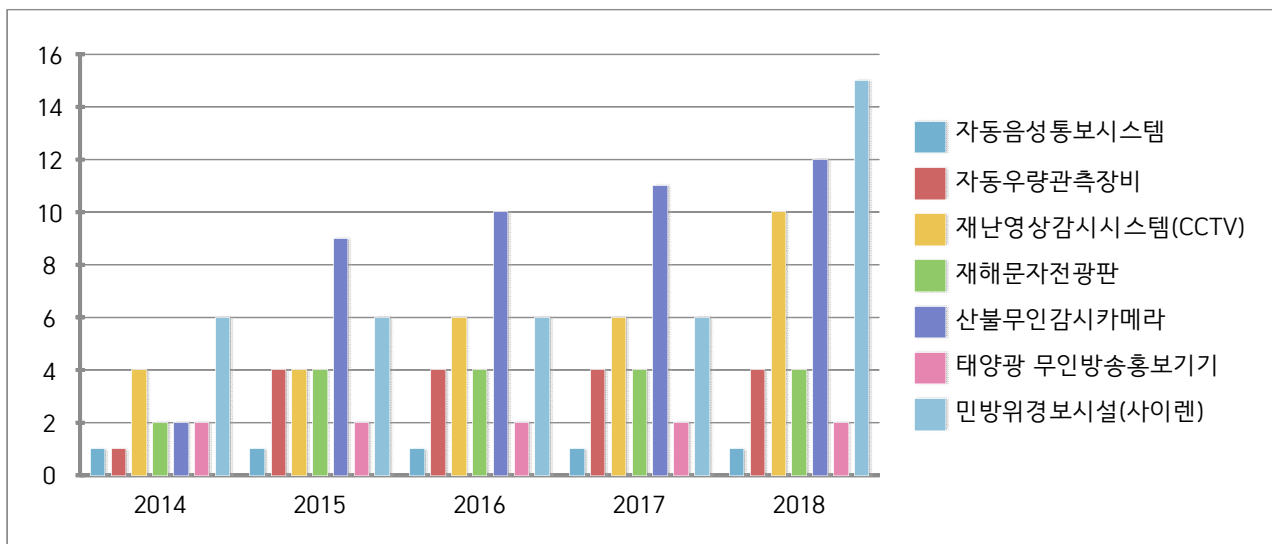
☞ 재난관리실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주요재난 관리부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 전체로 대상 확대

##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 구 분             | 개소 | 설치장소                                                                                 |
|-----------------|----|--------------------------------------------------------------------------------------|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1  | 남동구청                                                                                 |
| 자동수량관측장비        | 7  | 남동구청, 논현1동, 간석4동, 공단소방서                                                              |
|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 10 | 구월동3(펌프장, 저류지, 하천), 간석동1(부평농장절개지), 도림동1(수문), 장수동1(하천), 논현동2(펌프장, 저류지), 고잔동2(펌프장, 하천) |
| 재해문자전광판         | 4  | 구월동2, 만수동1, 남촌동1                                                                     |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 12 | 만월산 4, 소래산 3, 만수산 3, 오봉산 2                                                           |
| 태양광 무인방송홍보기기    | 2  | 만월산, 소래산                                                                             |
|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 15 | 남동구청외 14개소                                                                           |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1    | 1    | 1    | 1    | 1    |
| 자동우량관측장비        | 1    | 4    | 4    | 4    | 4    |
|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 4    | 4    | 6    | 6    | 10   |
| 재해문자전광판         | 2    | 4    | 4    | 4    | 4    |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 2    | 9    | 10   | 11   | 12   |
| 태양광 무인방송홍보기기    | 2    | 2    | 2    | 2    | 2    |
|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 6    | 6    | 6    | 6    | 15   |



☞ 산불재난 연중화에 따른 초동진압을 위해 산불진화장비 확충

##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실시

| 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기관         | 참석인원 | 비고 |
|----------------------|------------------|--------------|------|----|
| 재난대비 역량지원 심화과정(산불)   | '18.7.12. ~7.1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지자체 부단체장 재난안전 전문교육과정 | 2018.3.16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2018년 상반기 재난종사자교육    | 2018.4.25        | 인천시          | 6    |    |
| e-재난관리 일반            | 2018.4.1. ~4.21  | 인천시 인재개발원    | 1    |    |

| 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기관             | 참석인원 | 비고 |
|--------------------------------------|---------------------|------------------|------|----|
| 비상시 행동요령                             | 2018.5.1.<br>~5.21  | 인천시<br>인재개발원     | 1    |    |
| 재난관리 일반                              | 2018.5.1.<br>~5.21  | 인천시<br>인재개발원     | 1    |    |
| 재난 안전구호 일반                           | 2018.5.17.<br>~5.18 | 국가민방위재<br>난안전교육원 | 2    |    |
| 감염병위기대응 및 지침 통합과정                    | 2018.4.2.<br>~4.6   | 보건복지<br>인재개발원    | 1    |    |
| 재난의료지원 체계 교육                         | 2018.7.3            | 보건복지<br>인재개발원    | 3    |    |
| 재난의료 대비대응과정                          | 2018.7.3.<br>~7.4   | 보건복지<br>인재개발원    | 1    |    |
| 재난대비 역량지원 심화과정(산불)                   | 2018.7.12.<br>~7.13 | 국가민방위재<br>난안전교육원 | 1    |    |
| 재난안전실무자과정3기                          | 2018.8.27.<br>~8.29 | 인천시<br>인재개발원     | 1    |    |
| 재난안전분야 역량강화 교육                       | 2018.9.18           | 인천시              | 2    |    |
| 지자체 산불대응 역량강화 교육                     | 2018.11.29          | 산림청              | 1    |    |
|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br>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 2018.12.20          | 인천시              | 19   |    |

####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 일시                         | 장소             | 참석인원 | 내 용           | 주관             | 비고 |
|----------------------------|----------------|------|---------------|----------------|----|
| 2018. 9. 28.               | 인재개발원          | 1    | 역량강화교육        | 인재개발원          |    |
| 2018. 11. 14.<br>~ 11. 15. | 대한적십자사<br>인천지사 | 1    | 심리사회적<br>지지교육 | 대한적십자사<br>인천지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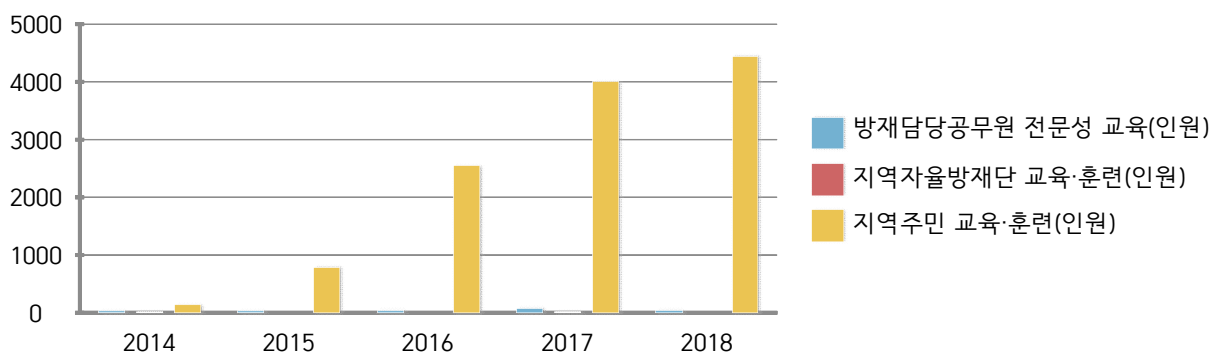
#### 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 교육/<br>훈련명             | 일시          | 장소                  | 참석<br>인원 | 내 용                            | 주관  | 비고 |
|------------------------|-------------|---------------------|----------|--------------------------------|-----|----|
| 찾아가는<br>심폐소생술<br>체험 교육 | 연중<br>(57회) | 행정복지<br>센터 및<br>보건소 | 2,134명   | 응급처치 교육 및<br>자동심장충격기<br>사용방법 등 | 남동구 |    |

| 교육/훈련명                       | 일시                                                             | 장소                | 참석인원   | 내 용                                                | 주관  | 비고 |
|------------------------------|----------------------------------------------------------------|-------------------|--------|----------------------------------------------------|-----|----|
| 2018년 산사태<br>재난대응 안<br>전한국훈련 | 2018.5.17.<br>14:00~1<br>5:30                                  | 소래산               | 39     | 산사태 대피 훈련                                          | 남동구 |    |
| 소소심<br>체험교육                  | 2018.5.11.<br>2018.5.15.<br>(2일간)                              | 남동구청              | 1,000명 | 화재발생시<br>피난요령,소화기<br>사용법 및<br>심폐소생술교육              | 남동구 |    |
| 청소년<br>안전·안보<br>교육           | 2018.7.30.<br>~7.31.                                           | 남동구청              | 650명   | - 화 재 대 피 요 령 ,<br>지진대처 방법<br>-국가안보의 중요성           | 남동구 |    |
| 2018년 남동<br>민방위 교실           | 2018.5.14.<br>~5.28.<br>(10회)<br>2018.11.12<br>~11.16.<br>(5회) | 남동구<br>민방위<br>교육장 | 616명   | -응급처치 및<br>비상사태 발생시<br>대처요령<br>-맨투맨 맞춤식<br>체험교육 실시 | 남동구 |    |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 30   | 32   | 37    | 72    | 42    |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 9    | 2    | 3     | 15    | 2     |
|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 129  | 779  | 2,539 | 3,995 | 4,439 |



####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지역 주민 교육 매년 강화
- 방재담당공무원, 자율방재단 교육실적은 전년대비 감소 하였으나 5년 평균 수준 유지

##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실적

## ◆ 제보·처리 실적

| 봉사단원(인원수) | 제보실적(건) | 처리실적(건) |    |    | 비 고 |
|-----------|---------|---------|----|----|-----|
|           |         | 완료      | 진행 | 불가 |     |
| 157       | 380     | 380     | -  | -  |     |

##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 연번 | 행사명                        | 주요내용                          | 행사일시                                         | 장소        | 참석인원 | 비고               |
|----|----------------------------|-------------------------------|----------------------------------------------|-----------|------|------------------|
| 1  | 안전점검의날                     | 화재, 가스 등 사고 예방<br>안전점검 및 홍보 등 | 매월4일<br>(연12회)                               | 남동구<br>관내 | 776  |                  |
| 2  | 어린이보호구역<br>불법주정차<br>금지 캠페인 | 교통문화 확산 등                     | 18.03.29<br>18.06.28<br>18.11.29<br>18.12.13 | 남동구<br>관내 | 134  | 분기별1회<br>이상(총4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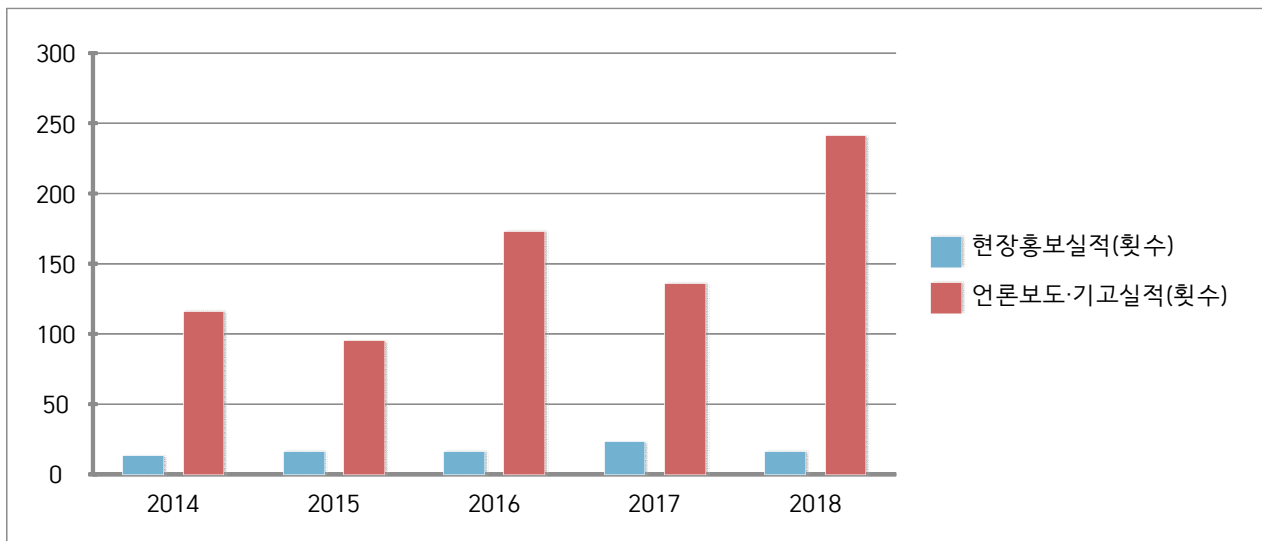
##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 연번 | 기사제목                         | 주요내용                                               | 보도(기고)<br>일시 | 언론사           | 비고 |
|----|------------------------------|----------------------------------------------------|--------------|---------------|----|
| 1  | 남동구 내집 내정포 앞<br>눈치우기 홍보 전개   | 내집 내정포앞 눈치우기<br>홍보 및 안전점검                          | 2018.1.9     | 시대일보 외<br>9건  |    |
| 2  | 봄철 산불방지 대책<br>본부 종합대책 추진     |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br>운영 홍보                              | 2018.01.25   | 일간경기 등<br>18개 |    |
| 3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br>캠페인            | 남동구 국가안전 대진단<br>홍보 및 설 명절 대비<br>다중밀집시설<br>안전사고예방홍보 | 2018.2.19    | 경기일보 외<br>14건 |    |
| 4  | 소래어시장 해빙기<br>안전사고예방<br>홍보캠페인 | 해빙기 안전사고예방 홍보<br>및 안전점검                            | 2018.3.6     | 경기일보 외<br>14건 |    |
| 5  | 교통안전 보행교통<br>지킴이 캠페인 실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 2018.4.2.    | 경도신문 외<br>10개 |    |

| 연번 | 기사제목                               | 주요내용                                 | 보도(기고)일시   | 언론사        | 비고 |
|----|------------------------------------|--------------------------------------|------------|------------|----|
| 6  | 남동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 산불 예방 홍보, 심폐소생술 교육                   | 2018.4.9   | 매일일보 외 9건  |    |
| 7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스트리트 체형 캠페인 개최         | 주민 밀집 상가지역 노상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실시  | 2018.5.15  | 산경일보 외 9건  |    |
| 8  | 2018년 산사태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산사태모의훈련 실시                           | 2018.05.22 | 선경일보 등 10개 |    |
| 9  |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토론 훈련                 | 토론훈련 실시로 임무와 역할 확립                   | 2018.5.10  | 서울일보 외 18개 |    |
| 10 |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현장훈련                  | 현장훈련 실시로 현장대응능력 강화                   | 2018.5.11  | 남동뉴스외 17개  |    |
| 11 | 교통안전 보행교통 지킴이 캠페인 실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 2018.7.2.  | 전국매일 외 17개 |    |
| 12 | 안전의식제고 안전문화장착 남동구,모래내시장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 장마 폭염대비                              | 2018.7.6   | 일간경기 외 17건 |    |
| 13 | 남동구, 모래내 전통시장 일원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안전 점검 및 불법건축물 예방캠페인      | 2018.9.20  | 서울일보 외 12건 |    |
| 14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본부 종합대책 추진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홍보                  | 2018.10.31 | 기호일보 등 7개  |    |
| 15 | 산불예방 및 안전보안관 2대 중점과제 홍보            | 안전보안관 2대 중점과제 홍보                     | 2018.11.26 | 시대일보 외 8건  |    |
| 16 | 교통안전 보행교통 지킴이 캠페인 실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 2018.11.30 | 일간경기 외 13개 |    |
| 17 | “우리 동네 눈치우기” 홍보 실시                 | “우리동네 눈치우기” 홍보 실시 및 안전보안관 2대 중점과제 홍보 | 2018.12.4  | 시대일보 외 11건 |    |
| 18 | 교통안전 보행교통 지킴이 캠페인 실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 2018.12.17 | 경도신문 외 10개 |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현장홍보실적(횟수)    | 13   | 16   | 16   | 23   | 16   |
|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 116  | 95   | 173  | 136  | 241  |



☞ 현장홍보 통합 운영에 따른 횡수 감소 및 안전보안관 홍보 등  
대 구민 언론 홍보수요 증가

####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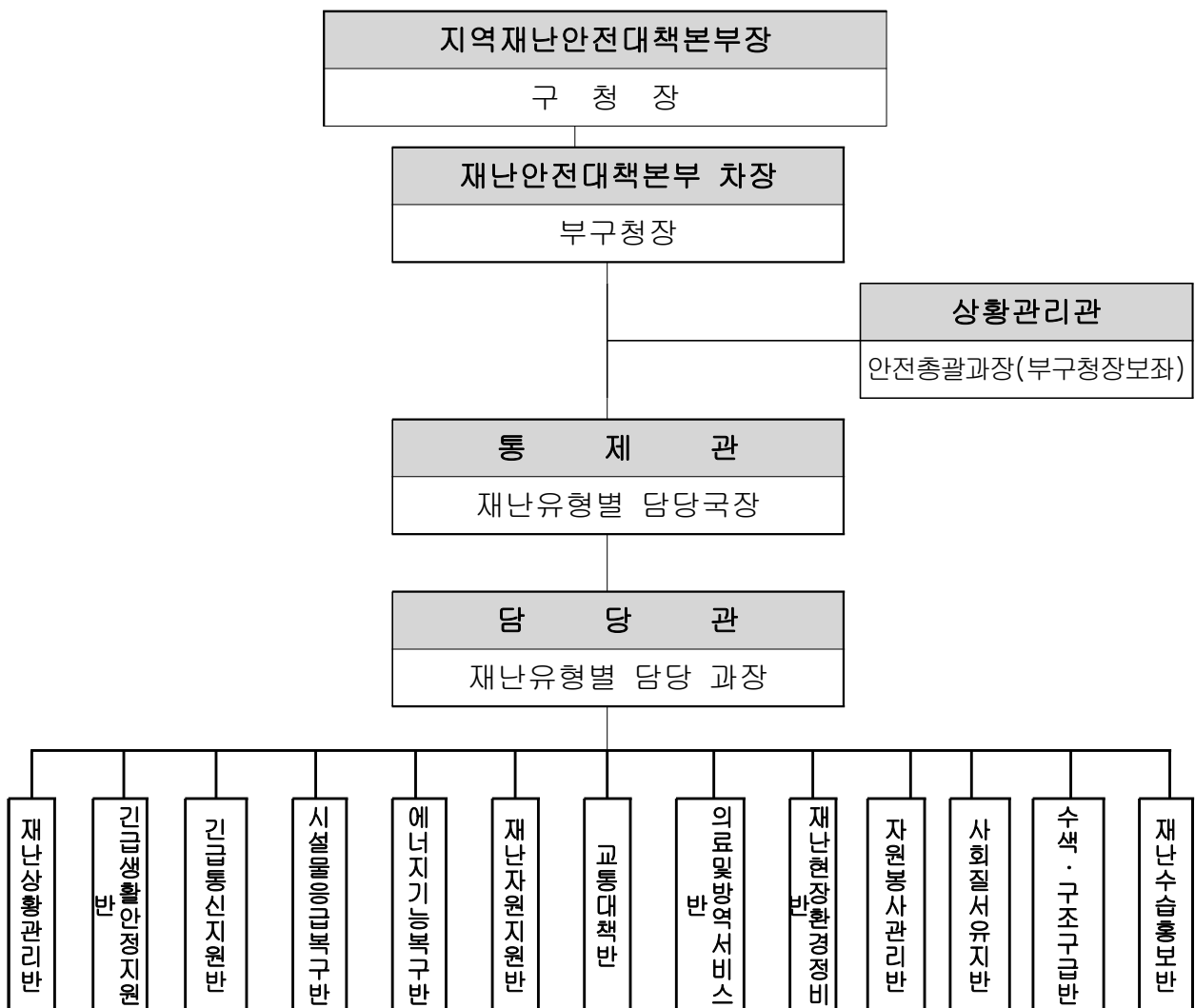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 구 분                          | 근 거                        | 구 성                                                                                 | 기 능                                                                                                                                                                                                                                                         |
|------------------------------|----------------------------|-------------------------------------------------------------------------------------|-------------------------------------------------------------------------------------------------------------------------------------------------------------------------------------------------------------------------------------------------------------|
| 안전관리위원회<br>(지역위원회)           | 「재난 및<br>안전관리<br>기본법」 제1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구청장</li> <li>• 위 원 : 22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li> <li>• 해당 지역내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li> <li>•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li> <li>•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li> <li>•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
| 안전관리실무<br>위원회                | 같은 법<br>제11조제3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부구청장</li> <li>• 위 원 : 13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li> <li>•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li> </ul>                                                                                                                                                                |
| 재난안전대책본부<br>(지역재난안전대책<br>본부) | 같은 법 제1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장 : 구청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

| 구 분               | 근 거                | 구 성     | 기 능                                                                                          |
|-------------------|--------------------|---------|----------------------------------------------------------------------------------------------|
| 재난 안전상황실<br>설치·운영 | 같은 법 제18조          | • 안전총괄과 |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br>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
| 산불방지<br>대책본부      | 산림보호법<br>제30조 제2항  | • 공원녹지과 | • 산불대책 수립<br>• 산불감시<br>• 산불신고 접수<br>• 산불 진화<br>• 산불예방 홍보 활동<br>•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br>• 산불진화용품 관리 |
| 산사태<br>예방지원본부     | 산림보호법<br>제45조4 제1항 | • 공원녹지과 |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점검<br>• 비상사태 시 지역주민대피<br>•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br>• 산사태 지역 복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총괄과)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복지정책과)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청소과, 환경보전과)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홍보미디어실)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설과, 농축수산물과, 문화체육과)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생활경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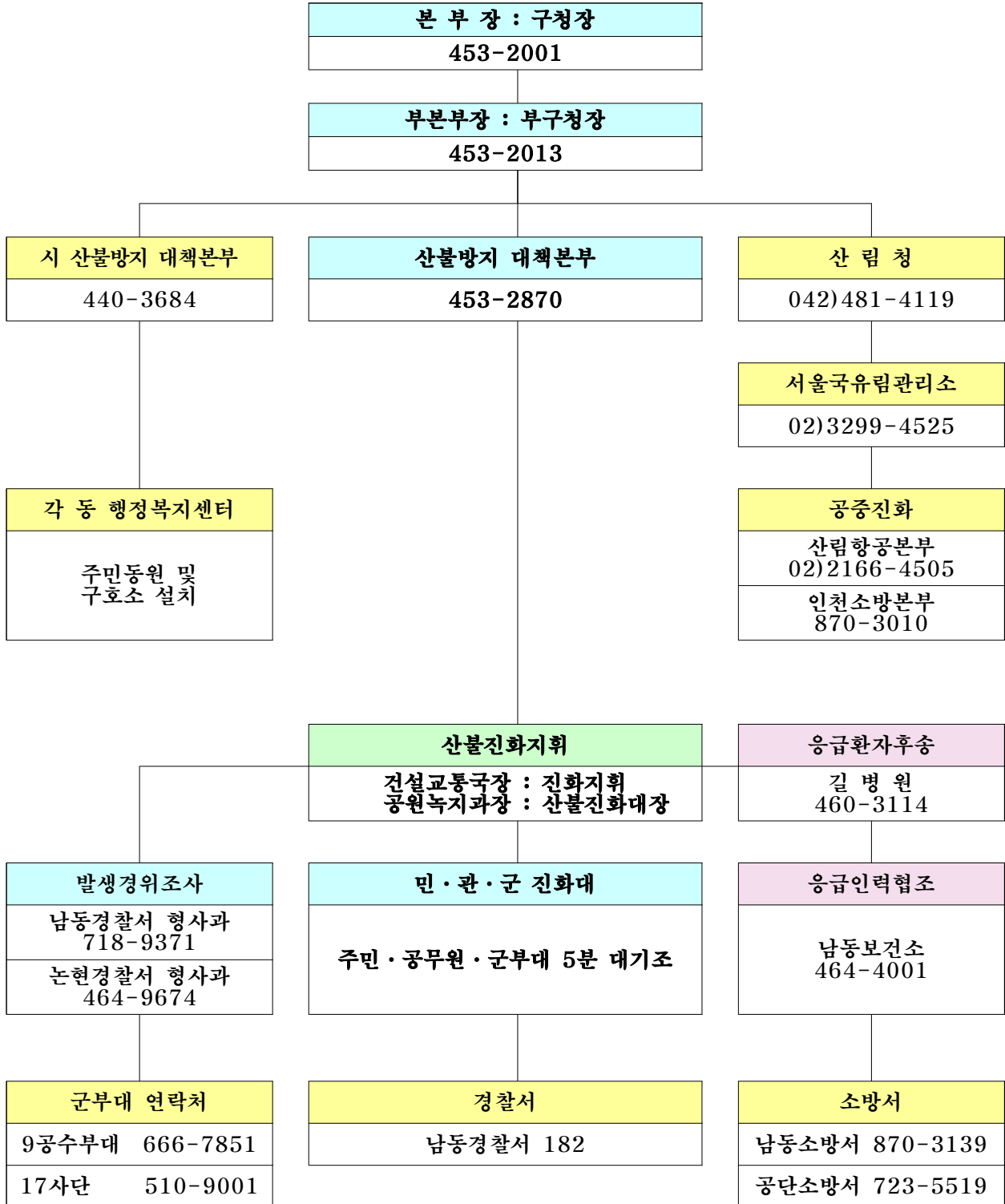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홍보미디어실)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총괄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행정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행정과)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복지정책과)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남동소방서, 공단소방서)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산불 발생]

##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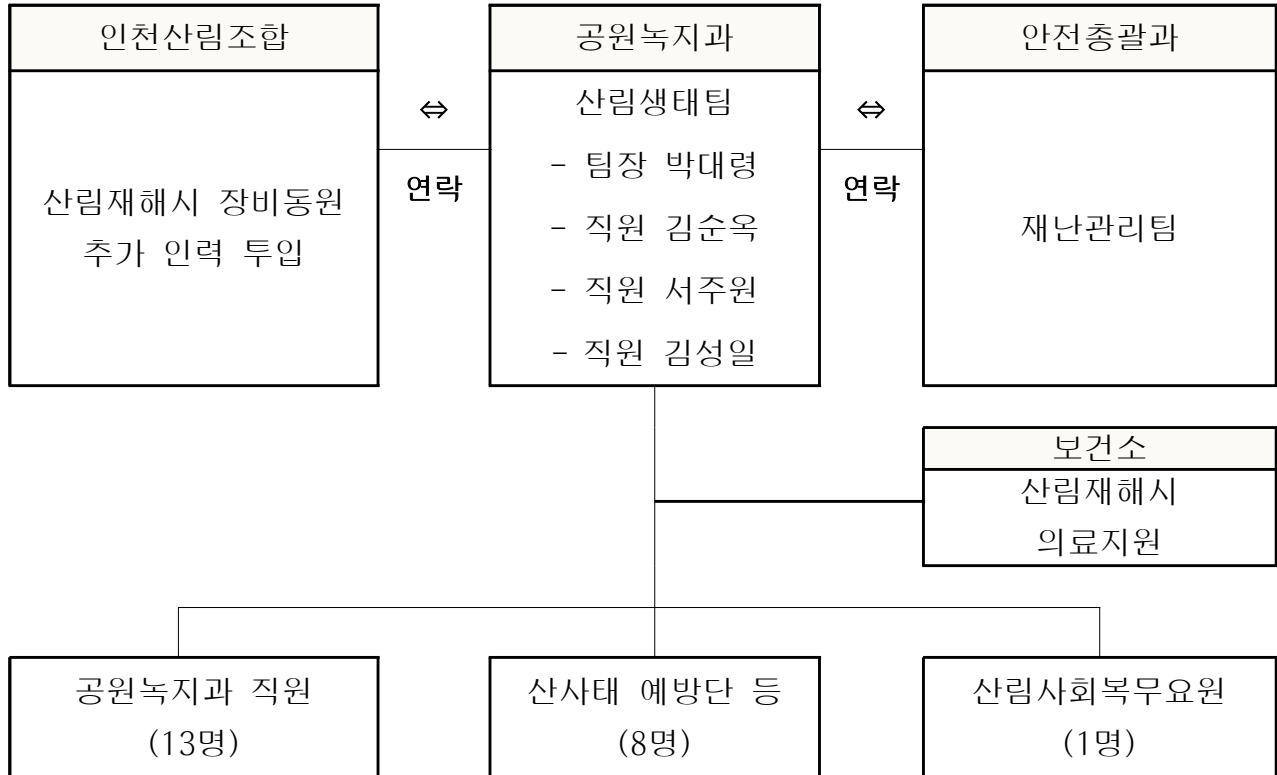
| 구 분    | 업 무<br>주관과 | 주관부서<br>전화번호 | fax                  | 비고 |
|--------|------------|--------------|----------------------|----|
| 청 장    | 산불방지과      | 042-481-4250 | 042-481-4260<br>4235 |    |
| 차 장    | 〃          | 〃            | 〃                    |    |
| 산림보호국장 | 〃          | 〃            | 〃                    |    |
| 산불방지과장 | 〃          | 〃            | 〃                    |    |
| 산불정책   | 〃          | 042-481-4251 | 〃                    |    |
| 산불예방   | 〃          | 042-481-4255 | 〃                    |    |
| 산불진화조사 | 〃          | 042-481-4257 | 〃                    |    |
| 산림항공안전 | 〃          | 042-481-4259 | 〃                    |    |

## □ 산불재난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 유관기관                   | 연 락 처                        | 유관기관                   | 연 락 처                            |
|------------------------|------------------------------|------------------------|----------------------------------|
| 시 산 불 상 황 실            | 440-3682                     | 1 7 사 단                | 521-1113                         |
| 남 동 소 방 서              | (주간)870-3139<br>(야간)870-5280 | 한전(신인천전력소)             | (주간)570-7351~2<br>(야간)570-7466~7 |
| 공 단 소 방 서              | (주간)723-5534<br>(야간)723-5519 | 산 불 상 황 실<br>( 산 림 청 ) | 042-481-4119                     |
| 남 동 경 찰 서<br>논 현 경 찰 서 | 469-5002<br>454-9761         | 부 평 구<br>산 불 상 황 실     | 032)509-6980                     |
| 9 공 수 여 단              | 620-6410                     | 시 흥 시<br>산 불 상 황 실     | 031)310-2340                     |

## [산사태]

##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기관명             | 전화번호                 | 기관명                  | 전화번호                        |
|-----------------|----------------------|----------------------|-----------------------------|
| 남동소방서<br>공단소방서  | 870-3139<br>723-5519 | 한국가스<br>안전공사         | 435-1525 ~ 8                |
| 남동경찰서<br>논현경찰서  | 718-9329<br>454-9761 | 인천도시가스(주)            | 570-7942                    |
| 한국전력공사<br>남인천지점 | 831-7123             | 대한적십자사<br>인천지사       | 815-5015                    |
| 남동수도사업소         | 720-3447             | 육군제7851부대<br>(9공수여단) | 620-6410<br>666-7851(휴일,야간) |
| 한국전기안전공사        | 290-7050             | 육군제2291부대<br>(17사단)  | 515-7113                    |

**[유해화학물질], [수질오염사고], [해양오염사고] ,**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 기능

| 구 분   | 비 상 단 계 임 무                                                                                                                                    |
|-------|------------------------------------------------------------------------------------------------------------------------------------------------|
| 통 제 관 |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
| 담 당 관 | ○ 본부장, 차장 및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상황총괄반 |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br>○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br>○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br>○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 관리 및 전파<br>○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처리 |

| 구 분   | 비 상 단 계 임 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li> <li>○ 긴급상황 관리 (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li> <li>○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 예방조치</li> <li>○ 본부장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시 보고자료 작성</li> <li>○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 지원</li> <li>○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li> <li>○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li> <li>○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li> <li>○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li> <li>○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li> <li>○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li> <li>○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li> <li>○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li> </ul> |
| 행정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명령 발령 (공문발송 전 해당 실과 서무에게 유선통보 등)</li> <li>○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li> <li>○ 주요인사 방문 시 보고자료 작성</li> <li>○ 당일 비상근무자 확인 및 복무단속</li> <li>○ 각종 회의 준비 및 개최</li> <li>○ 현장상황관리관 및 시 수습지원단 파견·관리</li> <li>○ 근무자를 대상으로 상황근무 및 근무체계 개선 및 근무수칙 보완 등</li> <li>○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별로 피해 및 응급복구 종합상황을 해당 구·군 홈페이지의 재난관련 코너에 게시토록 독려</li> <li>○ 그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li> </ul>                                                                                                    |
| 구조구급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구급상황 관리</li> <li>○ 유관기관 구조구급 협조체계 가동</li> <li>○ 구조구급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장비, 응급실, 구조요원 등)</li> <li>○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li> <li>○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li> <li>○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li> </ul>                                                                                                                                                                                                                                        |
| 비상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실과 및 파견기관별 소관현황 파악</li> <li>○ 파견기관의 언론보도·정보사항 등 확인 및 조치결과 보고</li> <li>○ 파견 기관별 상황대처 관련 각종 회의, 대책, 지침, 지시사항 등에 대한 자치 단체·관련기관의 이행실적 및 조치결과 파악</li> <li>○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 운영 지도</li> <li>○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li> </ul>                                                                                                                                                                                                                                     |

| 구 분         | 비 상 단 계 임 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실종자 유족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li> <li>○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li> <li>○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li> <li>○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 병력·장비지원 협조요청</li> <li>○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li> <li>○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 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및 선박·출입항 통제</li> <li>○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li> <li>○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확인</li> <li>○ 시민 공지가 필요한 주요사항 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교량, 도로, 항공 등 교통통제 및 해제 사항</li> <li>● 침수지역 퇴수 및 인명·대규모 피해지역 응급조치상황 등</li> </ul> </li> <li>○ 그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li> </ul> |
| 자원봉사<br>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군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li> <li>○ 자원봉사 장소, 인원 등 정확한 수요조사 및 자원봉사자의 적재적소 배분·배치 (지원내용, 인력, 필요장비 등 양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인력과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배분·배치하고, 기술인력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도구, 장비 등 사전준비</li> </ul> </li> <li>○ 자원봉사자 응급복구 투입현황 파악</li> <li>○ 타 시·도 자원봉사 지원</li> <li>○ 그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li> </ul>                                                                                                                                                                                                                                     |
| 공보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li> <li>○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자막방송 등)</li> <li>○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지원 등)</li> <li>○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li> <li>○ TV, 라디오, 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li> <li>○ 각종 TV, 라디오 인터뷰 전담</li> <li>○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li> </ul>                                                                                                                                                                                                                                                                                                          |

##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 기 관 · 단 체 별                               | 협 조 · 지 원 사 항                                        | 연락처(☎)                                |
|-------------------------------------------|------------------------------------------------------|---------------------------------------|
| 남동경찰서<br>논현경찰서                            | ○ 차량통제 및 교통관리 지원<br>○ 현장출입통제 지원                      | 718-3294<br>454-9257                  |
| 인천남동소방서<br>인천공단소방서                        |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br>○ 사고현장에 긴급구조 지휘·통제                   | 870-5280<br>723-5519                  |
|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교육<br>○ 각급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460-6114                              |
| 육군제7851부대                                 | ○ 인력 및 장비지원                                          | 889-6119                              |
| 남동수도사업소                                   | ○ 단수 및 비상급수 대책                                       | 720-3516                              |
| 인천상공회의소<br>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br>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입주지원) | ○ 재난예방 안전점검 지원<br>○ 재난대비 안전의식 교육강화<br>○ 재난업무 지원 및 협조 | 810-2800<br>810-9344<br>070-8895-7437 |
|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점                              | ○ 전력차단 및 공급<br>○ 비상발전기, 조명등 설치                       | 830-5267                              |
| 한국전기안전공사<br>인천지역본부                        | ○ 전기안전관리 및 기술지도<br>○ 정기적인 안전점검                       | 290-7050                              |
| KT인천지사                                    | ○ 긴급전화 가설                                            | 426-9001                              |
|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지사<br>인천도시가스(주)<br>(주)삼천리인천지역본부 | ○ 가스차단 및 공급<br>○ 정기적인 안전점검                           | 420-3126<br>570-7942<br>834-3002      |
| 대한건설협회인천광역시회<br>대한건축사협회<br>(인천건축사회)       | ○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 439-7272<br>437-3381                  |
|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 ○ 구호물자 지원 및 구급교육 지원·협조                               | 810-1332                              |
|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 ○ 현장의료소 설치<br>○ 응급환자분류 및 응급조치                        | 460-2158                              |
| 남동모범운전자회<br>해병대인천남동구전우회                   | ○ 경상자 후송 차량 지원<br>○ 재난현장 교통질서 계도<br>○ 인력지원           | 463-6880<br>466-7679                  |
| 남동구여성단체협의회                                | ○ 재난현장 자원봉사                                          | 446-3320                              |

##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건명(규정명칭)                        | 주요내용                                                                          | 제정일자       | 비고                  |
|---------------------------------|-------------------------------------------------------------------------------|------------|---------------------|
|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규정                                                  | 2005.02.22 |                     |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2008.10.24 |                     |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2005.11.25 |                     |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2005.02.22 |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 사전협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규정                           | 2007.09.28 |                     |
|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 ▪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007.08.03 |                     |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지진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12.12.31 |                     |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등에 관한 조례          |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2007.02.09 |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2017.12.22 |                     |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한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 규정                                             | 2014.03.12 |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 2013.05.13 | 2017. 11.10. 일 부 개정 |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세부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및 유관기관 협조 사항 규정        | 2013.5.2   |                     |

| 건명(규정명칭)                   | 주요내용                                                                     | 제정<br>일자       | 비고 |
|----------------------------|--------------------------------------------------------------------------|----------------|----|
| 대규모 수질오염<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유류·유해물질 등의 유출로 인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 2014.1.6       |    |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 법정부적 위기관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 규정                      | 2014.6.3<br>0  |    |
| 풍수해재난<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풍수해재난에 따른 남동구 및 소속기관의 수급복구 등 행동조치사항 규정                                 | 2008.04.       |    |
| 지진재난<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지진재난에 따른 남동구 및 소속기관의 수급복구 등 행동조치사항 규정                                  | 2012.01.       |    |
| 대형화산폭발<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대형화산폭발 재난에 따른 남동구 및 소속기관의 수급복구 등 행동조치사항 규정                             | 2014.04.       |    |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사업장에서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에 따른 남동구 및 소속기관의 수급복구 등 행동조치사항 규정                     | 2015.07.       |    |
| 지하철대형사고<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남동구 및 소속기관의 수급복구 등 행동조치사항 규정                           | 2017.09.<br>19 |    |
| 적조<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적조 발생 시 남동구 및 소속기관의 수급복구 등 행동조치사항 규정                                   | 2014.08.<br>01 |    |
| 산사태<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산사태 발생 시 남동구 및 소속기관의 수급복구 등 행동조치사항 규정                                  | 2018.05.       |    |
| 조수재난<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조수재난(어선사고) 발생 시 남동구 및 소속기관의 수급복구 등 행동조치사항 규정                           | 2018.10.       |    |
| 산불재난<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산불 재난 발생 시 남동구 및 소속기관의 수급복구 등 행동조치사항 규정                                  | 2017.06.       | 개정 |
| 공동구재난<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공동구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남동구 및 소속기관의 수급복구 등 행동조치사항 규정                        | 2014.04.       |    |

| 건명(규정명칭)               | 주요내용                                                | 제정<br>일자 | 비고 |
|------------------------|-----------------------------------------------------|----------|----|
| 연근해 어선사고<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연근해 어선사고 발생에 따른<br>남동구 및 소속기관의수급복구<br>등 행동조치사항 규정 | 2018.10. |    |
| 가축질병<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가축질병 재난 발생 시 남동<br>구 및 소속기관의수급복구 등<br>행동조치사항 규정   | 2016.07. |    |
| 감염병<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감염병 재난 발생 시 남동구<br>및 소속기관의수급복구 등 행동<br>조치사항 규정    | 2016.12. |    |
| 전력분야<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전력분야 재난 발생 시 남동<br>구 및 소속기관의수급복구 등<br>행동조치사항 규정   | 2017.06. |    |
| 보건의료<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보건의료체계 마비 시 남동구 및<br>소속기관의 수급복구 등 행동조치<br>사항 규정   | 2017.06. |    |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 시설<br>유형 | 시설명         | 시설<br>현황                                       | 관리<br>주체      | 지정<br>일자       | 조치한 사항 | 비고          |
|----------|-------------|------------------------------------------------|---------------|----------------|--------|-------------|
| 보건<br>의료 | 길병원         | 지하5층, 지상18층<br>대지면적6,828.9㎡,<br>연면적 15,225.33㎡ | 의료법인<br>길의료재단 | 2013.<br>10.31 | 해당사항없음 | 보건복<br>지부   |
| 교통<br>수송 | 인천교통<br>공사  | 지하3층, 지상8층<br>대지 222,376㎡<br>연면적 23,135㎡       | 인천교통<br>공사    | 2015.10        | 해당사항없음 |             |
| 식용수      | 수산정수<br>사업소 | 지하1층, 지상3층<br>대지 216,267㎡<br>연면적 19,327㎡       | 수산정수<br>사업소   | 2015.10        | 해당사항없음 | 주8동<br>부16동 |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 사업명                                       | 위치                      | 사업내용<br>(규모)        | 사업기간                                           | 사업비<br>(백만원)          | 정비목적                             |
|-------------------------------------------|-------------------------|---------------------|------------------------------------------------|-----------------------|----------------------------------|
| 배수펌프장<br>방수공사                             | 남동,소래<br>배수펌프장          | 배수펌프장<br>방수         | 2018.10.15<br>~ 12.14                          | 70                    | 배수펌프장<br>유지관리                    |
| 재난감시용<br>CCTV설치                           | 배수펌프장<br>수문, 하천<br>급경사지 | CCTV교체<br>및 신설      | 2018.11.01<br>~2018.12.<br>23                  | 180                   | 재난예경보시스<br>템 유지관리                |
| 유수지 및<br>수문관리                             | 관내<br>유수지 및<br>수문       | 유수지 및<br>수문<br>유지관리 | 2018.01.01<br>~ 12.31                          | 4                     | 유수지 및 수문<br>유지관리                 |
| 간석동<br>산34-9번<br>지 일원<br>위험사면<br>정비사업     | 간석동<br>산34-9번<br>지      | 낙석방지망<br>설치         | 2018. 9.<br>~ 2019.<br>3.                      | 629                   | 급경사지<br>낙석방지망<br>설치 등<br>위험사면 정비 |
| 상반기 남동<br>구 관내 도<br>로 시 설 물<br>정기점검용<br>역 | 관내                      | 수현교 외<br>27개소       | 2018.3.9.~<br>6.16                             | 45                    | 시설물<br>안전점검                      |
| 하반기 남동<br>구 관내 도<br>로 시 설 물<br>정기점검용<br>역 | 관내                      | 수현교 외<br>29개소       | 2018.12.21.~<br>2019.2.18                      | 46                    | 시설물<br>안전점검                      |
| 소래·논현<br>공동구<br>유지관리<br>용역                | 소래·논현<br>공동구            | 공동구<br>유지관리         | 2018.1.1<br>~ 12.31<br>※총용역<br>기간<br>'16년~'20년 | 800<br>※총용역비<br>4,000 | 공동구<br>유지관리                      |
| 관내<br>하수도<br>정비 및<br>준설공사                 | 관내                      | 하수도<br>정비 및<br>준설   | 2018.1.1<br>~ 12.31                            | 6,712                 | 관내<br>하수도시설<br>정비                |

※ 재난방지시설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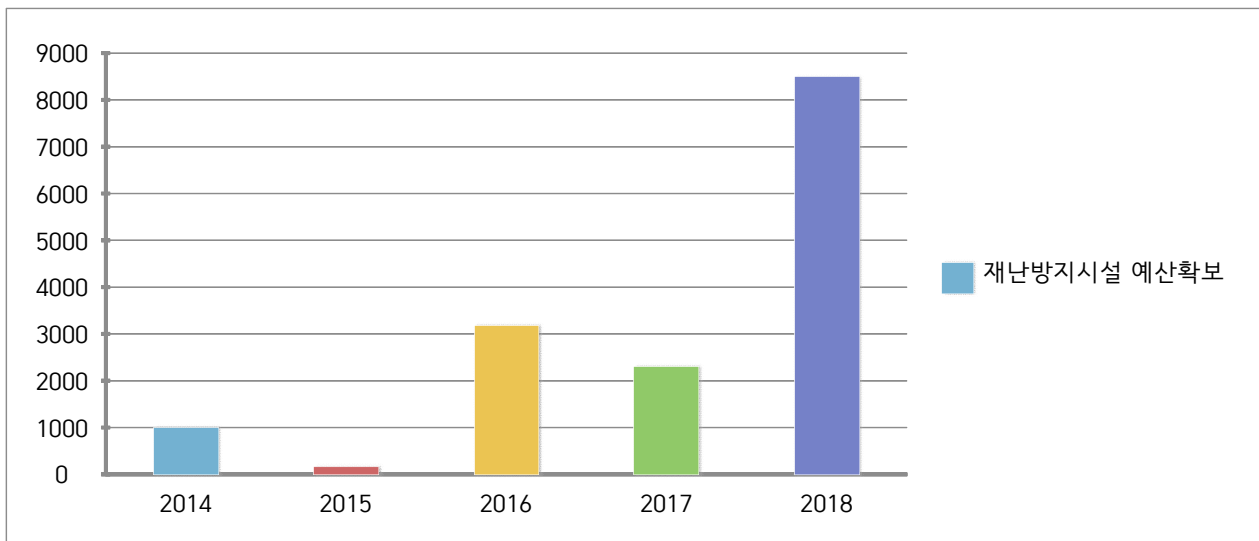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낙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작성범위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본예산, 추가경정 예산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 990  | 160  | 3,180 | 2,297 | 8,486 |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하수도 정비 및 준설수요 급증으로 인한 예산 증가

##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 구분 | 계  | 오일<br>웬스 | 흡착포 | 흡착물 | 흡착물 | 유<br>처리제<br>(고상) | 유<br>처리제<br>(액상) | 소석회 |
|----|----|----------|-----|-----|-----|------------------|------------------|-----|
|    |    | m        | BOX | BOX | BOX | kg               | ℓ                | 포   |
| 총계 | 7종 | 200      | 10  | 10  | 12  | 200              | 90               | 18  |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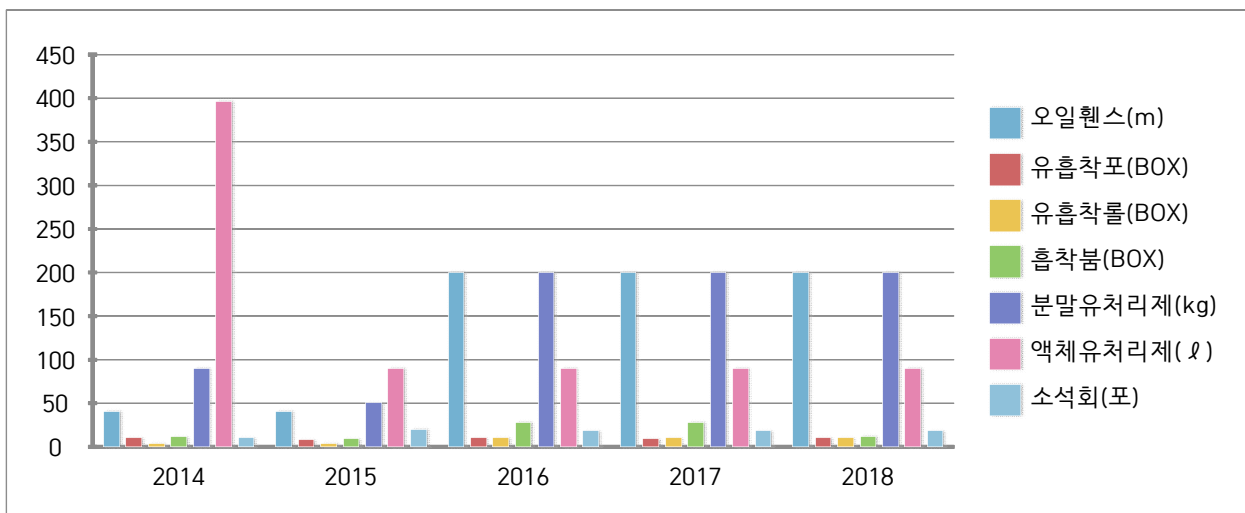
| 구분   | 개소  | 의사    | 간호사   | 구급차 | 병상수   | 영안실 |
|------|-----|-------|-------|-----|-------|-----|
| 합계   | 712 | 1,184 | 2,463 | 32  | 6,992 | 1   |
| 의료기관 | 711 | 1,181 | 2,449 | 31  | 6,992 | 1   |
| 보건소  | 1   | 3     | 14    | 1   | -     | -   |

[수용시설]

| 구분 | 합 계 |        | 학 교 |       | 마을회관 |     | 경로당 |     | 관공서 |     | 기 타 |       |
|----|-----|--------|-----|-------|------|-----|-----|-----|-----|-----|-----|-------|
|    | 개소  | 수용원    | 개소  | 수용원   | 개소   | 수용원 | 개소  | 수용원 | 개소  | 수용원 | 개소  | 수용원   |
| 총계 | 44  | 16,287 | 36  | 6,069 |      |     | 2   | 150 | 4   | 412 | 2   | 9,656 |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방재물자 종류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오일웬스(m)    | 40   | 40   | 200  | 200  | 200  |
| 유흡착포(BOX)  | 10   | 8    | 10   | 9    | 10   |
| 유흡착물(BOX)  | 4    | 4    | 10   | 10   | 10   |
| 흡착붕(BOX)   | 11   | 9    | 28   | 28   | 12   |
| 분말유처리제(kg) | 90   | 50   | 200  | 200  | 200  |
| 액체유처리제(ℓ)  | 396  | 90   | 90   | 90   | 90   |
| 소석회(포)     | 10   | 20   | 18   | 18   |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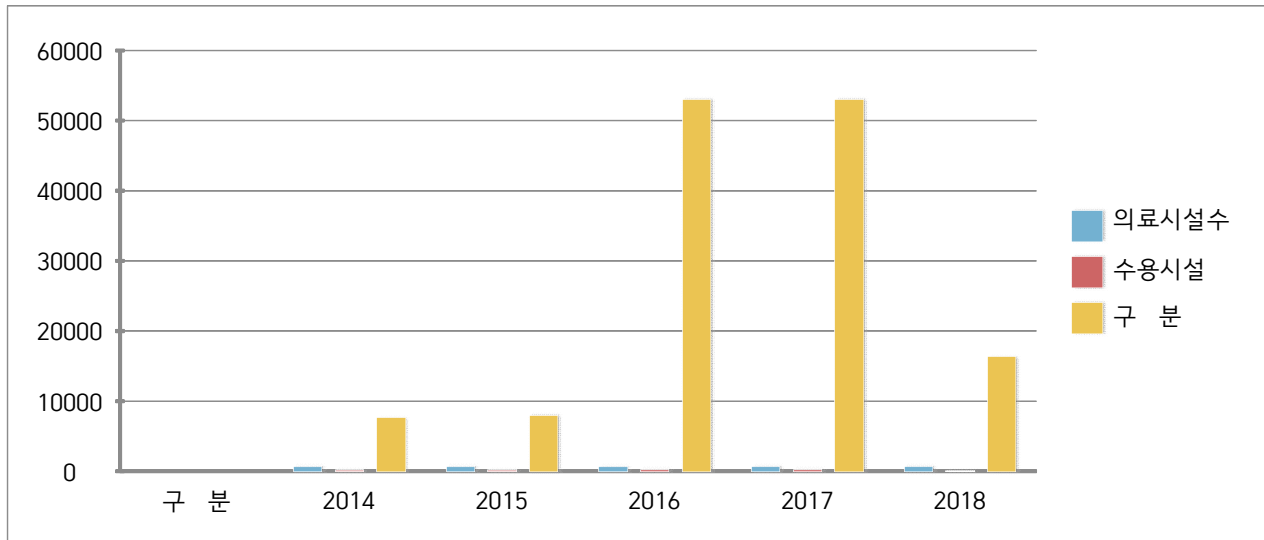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방제훈련(작업) 등으로 인한 흡착포 등 사용
- 노후화된 유처리제, 소석회 등 폐기처리
- 방제용품 추가 구입 등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의료시설수 |      | 625   | 641   | 660    | 682    | 711    |
| 수용시설  | 개소   | 157   | 164   | 216    | 216    | 44     |
|       | 수용인원 | 7,568 | 7,934 | 53,036 | 53,036 | 16,287 |



#### ☞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수용시설(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수용면적, 수용인원 등 현행화 시행
- 종전 수용시설(임시주거시설)의 전체연면적 등을 적용한 시설에 대하여, 강당, 체육관 등 실제 사용가능한 수용시설(임시주거시설)의 수용면적, 수용인원 등을 적용하여 재정비 함

###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 [장비지정]

##### ◆ 구조장비

| 구분 | 계  | 사다리차 | 구조공작차 | 배연차 | 헬기 | 구급차 | 기타 |
|----|----|------|-------|-----|----|-----|----|
| 총계 | 32 | -    | -     | -   | -  | 32  | -  |

##### ◆ 복구장비

| 구분 | 계  | 크레인 | 굴삭기 | 불도저 | 덤프 | 청소차 | 기타 |
|----|----|-----|-----|-----|----|-----|----|
| 총계 | 55 | -   | 17  | 2   | 8  | 9   | 19 |

##### ◆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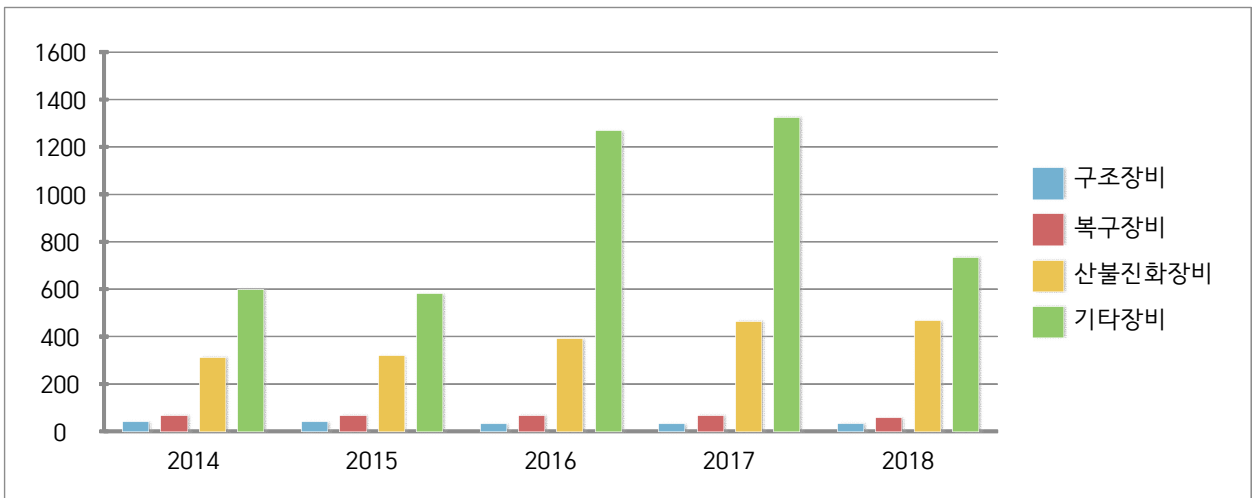
| 구분 | 계   | 감시카메라 | 무전기 | 등짐펌프 | 진압삽 | 진압갈퀴 | 진화차량 | 렌턴 |
|----|-----|-------|-----|------|-----|------|------|----|
| 총계 | 466 | 11    | 40  | 106  | 102 | 164  | 3    | 40 |

## ◆ 기타장비

| 구분 | 계   | 기계톱 | 양수기 | 기타 |
|----|-----|-----|-----|----|
| 총계 | 734 | 11  | 723 |    |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구조장비   | 39   | 39   | 31    | 31    | 32   |
| 복구장비   | 66   | 66   | 66    | 66    | 55   |
| 산불진화장비 | 310  | 317  | 388   | 464   | 466  |
| 기타장비   | 597  | 579  | 1,266 | 1,325 | 734  |



##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복구 장비 중 군소요 장비 제외
- 기타 장비 중 삽 등 소모성 장비 제외

## [인력지정]

## ◆ 기술인력

| 구분 | 계  | 토목 | 건축 | 환경 | 전기 | 가스 | 통신 | 화공 | 기타 |
|----|----|----|----|----|----|----|----|----|----|
| 인원 | 35 | -  | -  | -  | 2  | -  | 9  | 1  | 23 |

## ◆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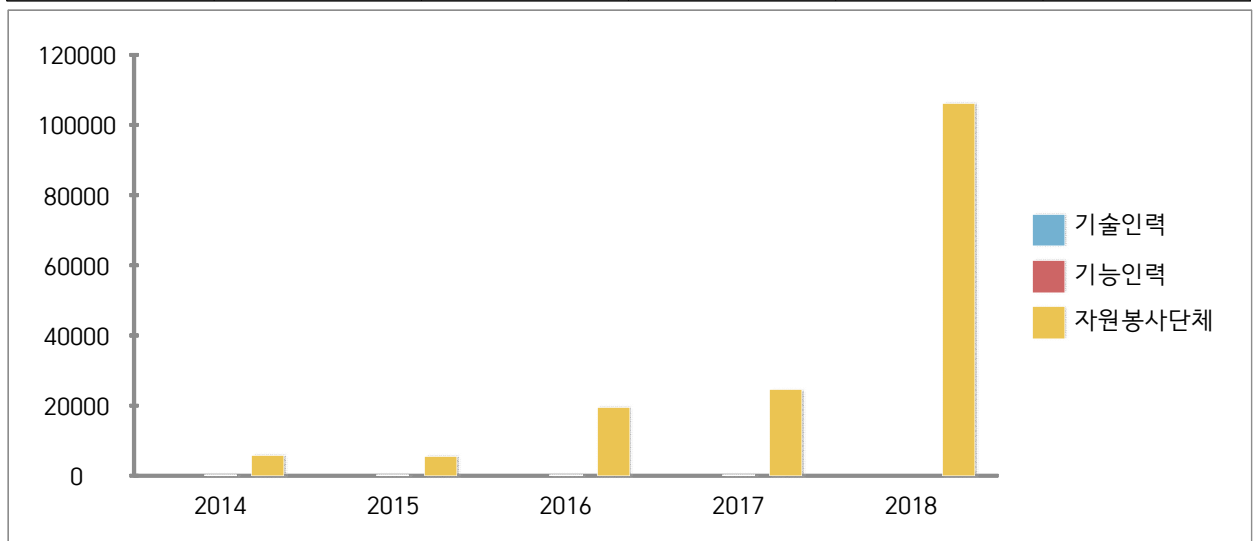
| 구분 | 계  | 전기<br>공 | 기계<br>공 | 통신<br>공 | 착암<br>공 | 절단<br>공 | 용접<br>공 | 철근<br>공 | 기타 |
|----|----|---------|---------|---------|---------|---------|---------|---------|----|
| 인원 | 40 | 4       | 6       | 3       | -       | -       | 3       | -       | 24 |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 구분 | 계       | 특수단체 및 개인     |               |               |                   |    | 봉사단체 및 개인  |            |           |            |         |
|----|---------|---------------|---------------|---------------|-------------------|----|------------|------------|-----------|------------|---------|
|    |         | 의용<br>소방<br>대 | 산악<br>구조<br>대 | 수중<br>구조<br>대 | 아마추어<br>무선<br>봉사대 | 기타 | 적십자<br>봉사대 | 새마을<br>부녀회 | 해병전<br>우회 | 모범운<br>전자회 | 기타      |
| 인원 | 106,036 | 358           | -             | -             | 40                | -  | 42         | 661        | 99        | 103        | 104,733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기술인력             | 42    | 35    | 35     | 35     | 35      |
| 기능인력             | 92    | 92    | 92     | 92     | 40      |
| 자원봉사단체<br>특수단체 등 | 5,723 | 5,523 | 19,338 | 24,496 | 106,036 |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지정 자원 이동에 따른 기능인력 감소
- 자원봉사단체 가입회원 추가 등록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 점검·평가 명            | 점검·평가일시            | 점검·평가 주관기관     | 점검·평가 결과          | 비고 |
|--------------------|--------------------|----------------|-------------------|----|
| 재난관리평가             | 2018.1.1.~ 3.31    | 행정안전부          | 우수기관              |    |
|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평가     | 2018.연중            | 인천시            | 우수기관              |    |
| 안전한국훈련             | 2018.5             | 행정안전부          | 우수기관              |    |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합동점검 | 2018.4.20.~ 4.24   | 시 재난예방과, 행정안전부 | -                 |    |
| 지역안전도 평가           | 2018.10.17.~ 10.30 | 시 재난예방과, 행정안전부 | 2등급[전년도대비 2등급 향상] |    |
|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합동점검 | 2018.10.24.~ 10.26 | 시 재난예방과, 행정안전부 | -                 |    |

####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시설물별  | 내진설계 대상(①)<br>(동수, 시설물 수) | 내진설계 적용<br>+내진성능확보+<br>내진 보강 실적(②)<br>(전년도 까지) | 2018년 내진보강 실적  |                | 내진율(%)<br>(②+③)/①<br>×100 |
|-------|---------------------------|------------------------------------------------|----------------|----------------|---------------------------|
|       |                           |                                                | 동수(시설수)<br>(③) | 투자사업비<br>(백만원) |                           |
| 계     | 90                        | 61                                             | 3              | 124            | 71.1                      |
| 공공건축물 | 60                        | 36                                             | 0              | 0              | 60                        |
| 도로시설물 | 9                         | 4                                              | 3              | 124            | 77.8                      |
| 공동구   | 1                         | 1                                              | 0              | 0              | 100                       |
| 병원시설  | 20                        | 20                                             | 0              | 0              | 100                       |

※ 내진설계 적용 : 관련 법령이 제정된 후 설치되어 내진설계가 적정하게 반영된 건축물(시설물)

※ 내진성능 확보 : 기존시설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평가되는 건축물(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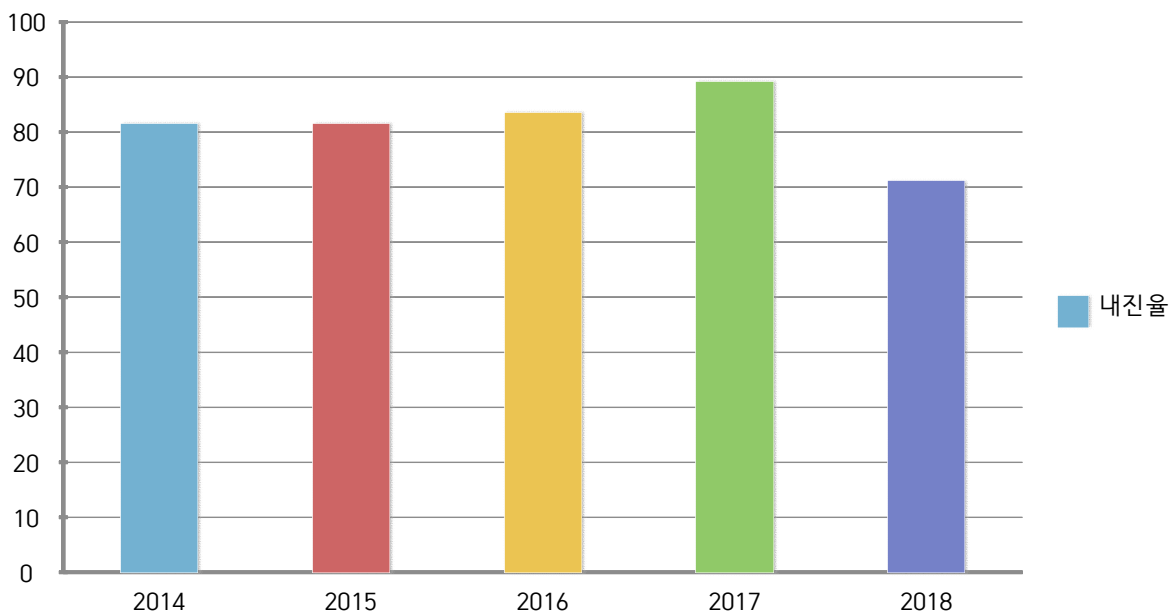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 내진보강 : 건축물(시설물) 건축시 내진보강이 적용되지 않아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

※ 투자사업비 : 내진보강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합산한 금액임

####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내진율 | 81.5 | 81.5 | 83.5 | 89.2 | 71.1 |



☞ 내진실적 및 내진율의 증감 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전수조사 실시로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대상 시설 수 증가
- 2018년도 내진보강사업(도로시설물) 3개소 실시

##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 구 분    | 구조체<br>내진 보강<br>여부 | 지대본·상황실          |                                 | 비고               |
|--------|--------------------|------------------|---------------------------------|------------------|
|        |                    | 바닥 이중마루<br>보강 여부 | 전력과 통신 등<br>관련설비 면진테이블<br>설치 여부 |                  |
| 지역대책본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설치                              | 2016<br>설치<br>완료 |
| 종합상황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설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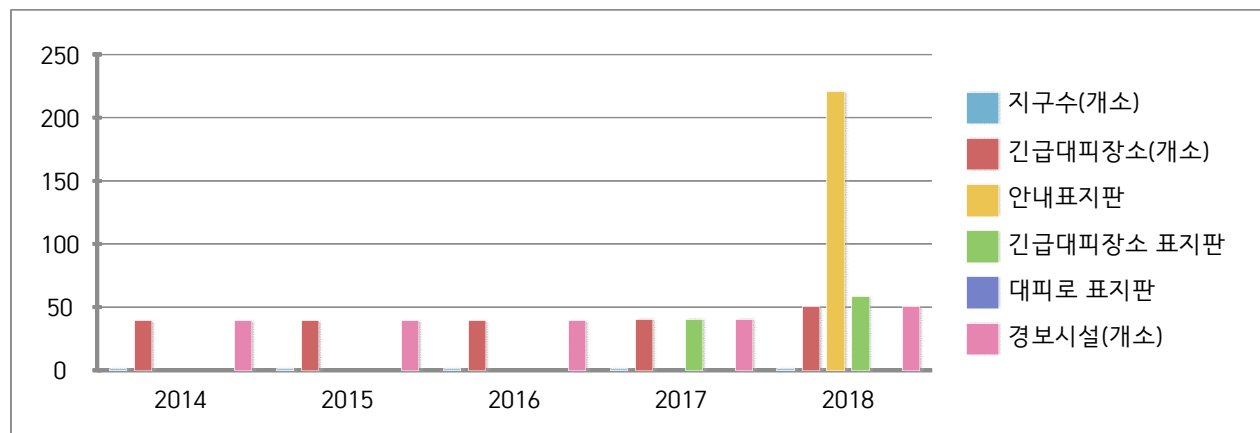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은 남동구청 본관 건물로 내진설계 적용 공공시설물
- 2016년도 재난종합상황실 면진테이블 설치 추진

##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 지구별 | 긴급대피장소<br>(개소) | 표지판(개) |           |             |            | 경보<br>시스템<br>(개소) |
|-----|----------------|--------|-----------|-------------|------------|-------------------|
|     |                | 계      | 안내표지<br>판 | 대피장소<br>표지판 | 대피로<br>표지판 |                   |
| 남동구 | 50개소           | 278    | 220       | 58          | -          | 50                |

##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            |      |      |      | 13,867 | 17,468 |
| 지구수(개소)         |            | 1    | 1    | 1    | 1      | 1      |
| 긴급대피장소(개소)      |            | 39   | 39   | 39   | 40     | 50     |
| 표<br>지<br>판     | 안내표지판      | 0    | 0    | 0    | 0      | 220    |
|                 |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 0    | 0    | 0    | 40     | 58     |
|                 | 대피로 표지판    | 0    | 0    | 0    | 0      | 0      |
| 경보시설(개소)        |            | 39   | 39   | 39   | 40     | 50     |



- 2018년도 지진옥외대피장소 10개소 추가지정(40개소→50개소)

- 2018년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18개소 및 아파트용 안내표지판 220개소 설치(사업비 : 17,468천원)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 법정적립기준    | 당해연도<br>확보기준액(①) | 확보액(②)    | 확보율<br>(①/②×100) |
|-----------|------------------|-----------|------------------|
| 1,120 백만원 | 1,120 백만원        | 1,120 백만원 | 100%             |

####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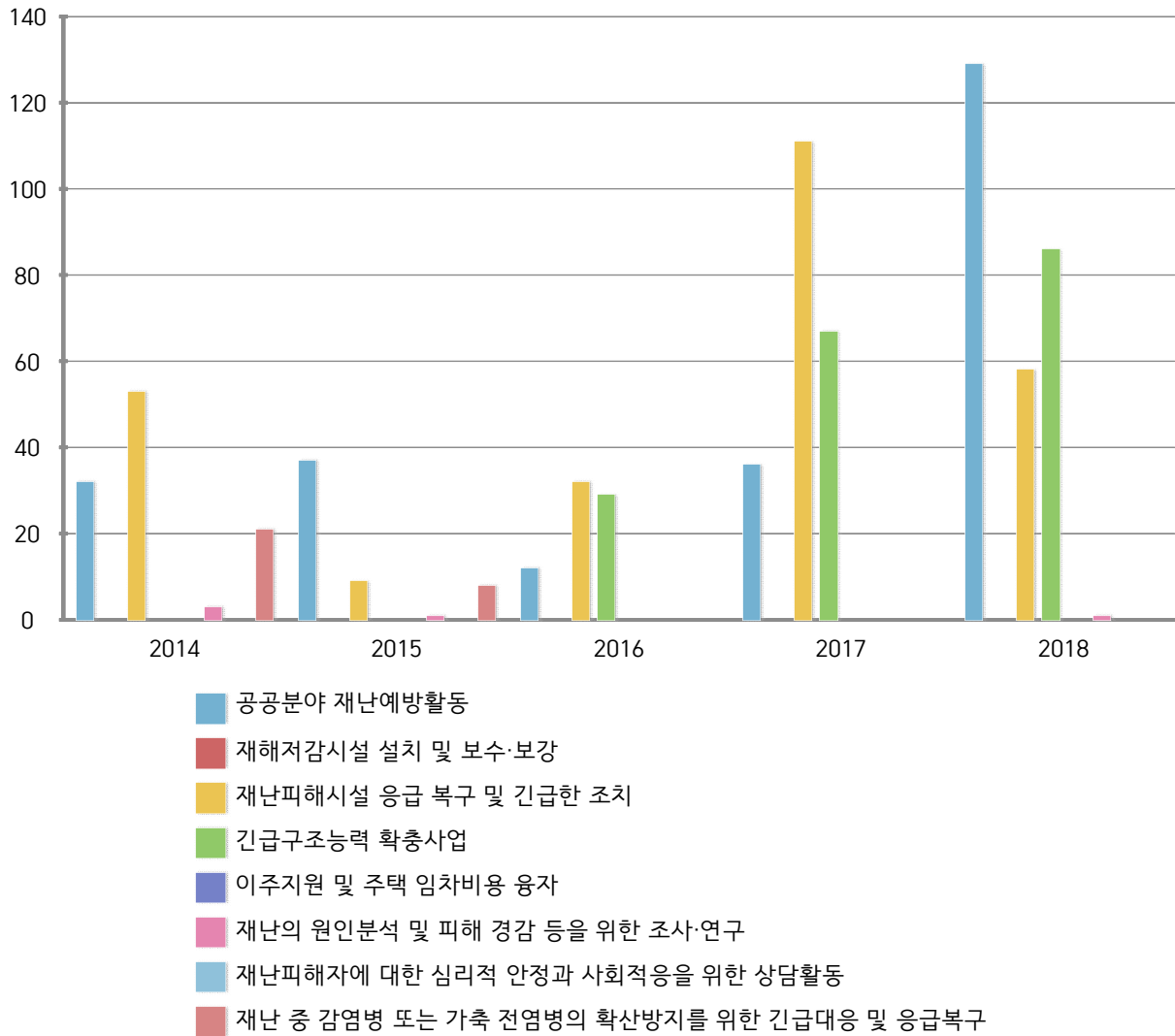
####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인적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확보액         |                                             | 821  | 1,006 | 1,029 | 1,074 | 1,120 |
| 사<br>용<br>액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32   | 37    | 12    | 36    | 129   |
|             |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br>보수·보강                        | 0    | 0     | 0     | 0     | 0     |
|             |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br>긴급한 조치                    | 53   | 9     | 32    | 111   | 58    |
|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0    | 0     | 29    | 67    | 86    |
|             |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br>융자                        | 0    | 0     | 0     | 0     | 0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br>등을 위한 조사·연구             | 3    | 1     | 0     | 0     | 1     |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br>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0    | 0     | 0     | 0     | 0     |
|             |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br>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21   | 8     | 0     | 0     | 0     |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폭염 장기화 등 재난관리기금 수요 증가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 행동매뉴얼 명          | 소관 국 또는 과 | 작성년도  | 매뉴얼 주요내용                 |
|------------------|-----------|-------|--------------------------|
| 풍수해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안전총괄과     | 2013년 | 풍수해 재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안전총괄과     | 2014년 | 지진재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대형화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안전총괄과     | 2014년 | 대형 화산 폭발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행동매뉴얼 명                 | 소관 국 또는 과      | 작성년도  | 매뉴얼 주요내용                                           |
|-------------------------|----------------|-------|----------------------------------------------------|
|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농축수산과          | 2014년 | 적조재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공원녹지과          | 2015년 | 산불예방<br>산불방지                                       |
| 산사태 예방대응 현장 매뉴얼         | 공원녹지과          | 2015년 | 산사태예방 및 대응                                         |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환경보전과          | 2013년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대응 및 대비 지침                         |
|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환경보전과          | 2014년 | 유류·유해물질 등의 유출로 인한 대응 및 대비 지침                       |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환경보전과          | 2014년 | 해상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대비 지침                           |
| 공동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 건설과            | 2013년 | 공동구 재난으로 인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안전총괄과          | 2015년 | 사업장에서 대규모 인적사고의 발생할 우려 있는 사태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농축수산과          |       | 가축질병의 발생에 대비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 보건행정과          | 2011년 |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보건행정과          | 2012년 | 보건의료분야(의료기관 서비스 중단)에 위기 발생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기업지원과          | 2017년 | 전력수급 불안으로 국민생활 장애 및 인적사고 발생우려에 따른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안전총괄과<br>교통행정과 | 2017년 |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조수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농축수산과          | 2018년 | 조수재난(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연근해 어선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농축수산과          | 2018년 | 연근해 어선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

##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 행동매뉴얼 명          | 개정일자       | 주요개정내용               | 비고 |
|------------------|------------|----------------------|----|
| 풍수해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2018.11.14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2018.11.14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대형화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2018.11.14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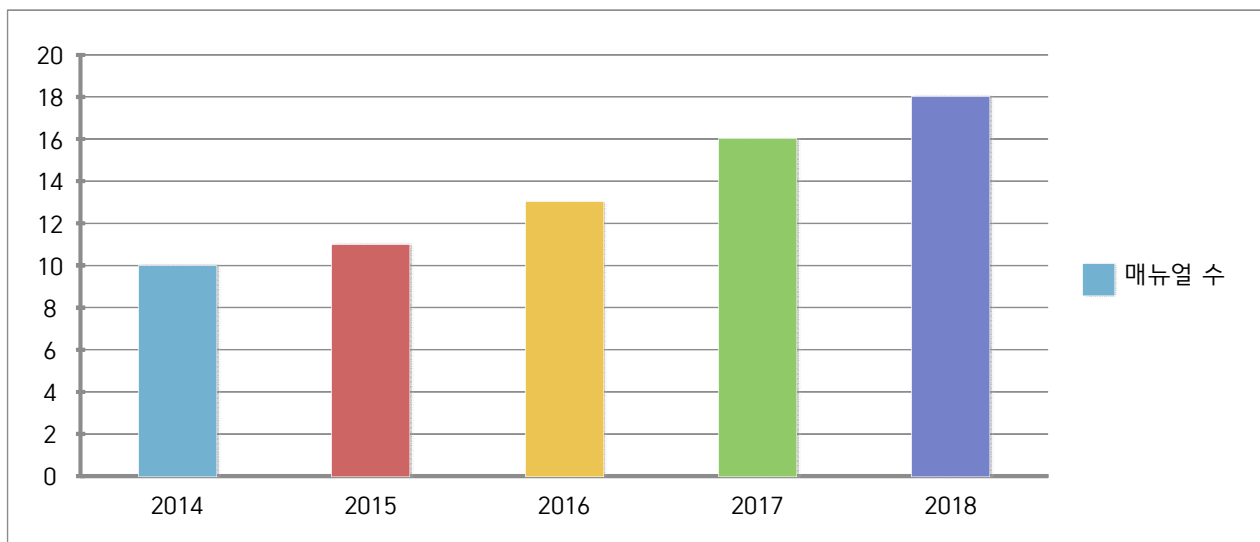
| 행동매뉴얼 명                    | 개정일자       | 주요개정내용               | 비고 |
|----------------------------|------------|----------------------|----|
| 적조 현장조치<br>행동매뉴얼           | 2016.12.23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산불재난 현장조치<br>행동매뉴얼         | 2018.11.15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산사태 예방대응<br>현장 매뉴얼         | 2018.11.15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2018.11.14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대규모 수질오염사고<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2018.11.14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2018.11.14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공동구 현장조치<br>행동 매뉴얼         | 2018.11.16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2018.11.14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가축질병 현장조치<br>행동매뉴얼         | 2018.11.14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감염병 현장조치<br>행동 매뉴얼         | 2018.11.13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보건의료 현장조치<br>행동매뉴얼         | 2018.06.25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전력분야 현장조치<br>행동매뉴얼         | 2018.11.15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지하철 대형사고<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2018.11.14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조수재난 현장조치<br>행동매뉴얼         | 2018.10.01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연근해 어선사고<br>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2018.10.01 | 유관기관 연락처 등 행동매뉴얼 현행화 |    |

##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 행동매뉴얼 명                | 훈련일시       | 주요 훈련내용                                                                                   | 훈련결과 개선내용                                                      | 비고 |
|------------------------|------------|-------------------------------------------------------------------------------------------|----------------------------------------------------------------|----|
| 대규모 수질오염<br>위기관리 행동매뉴얼 | 2018.4.25  | 가상의 유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설정하고 오염물질 확산 방지.제거, 보고수행 절차 및 방제장비의 정확한 사용 방법과 숙달 위주의 현장 업무 중심으로 실시 | · 수질오염물질 하천 유입 시 효율적인 방제 대응 능력 배양<br>·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방제물품 정비 |    |
| 산불재난현장조치행<br>동매뉴얼      | 2018.11.6. | 산불상황을 가정한 모의진화훈련 실시                                                                       |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                                            |    |
| 공동구 현장조치 행동<br>매뉴얼     | 2018.4.4.  | 소래논현지구 공동구 화재 등 사고를 가정한 현장훈련                                                              | ·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능력 점검                                 |    |

##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매뉴얼 수 | 10   | 11   | 13   | 16   | 18   |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실무담당자가 바뀌어도 누구나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작성 대상 확대
- 조수재난, 연근해 어선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추가

##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진단분야별 점수]

| 구 분  | 재해<br>위험요인 | 예방대책<br>추진 | 예방시설<br>정비 | 안전도<br>지수 | 등급(그룹) |
|------|------------|------------|------------|-----------|--------|
| 진단결과 | 0.313      | 0.940      | 0.725      | 0.421     | 2      |

\* (안전) 1등급/그룹 ‘가’ < - - - - - > 10등급/그룹 ‘마’ (위험)

- 2017년 4등급에서 2018년 2등급으로 전년도 대비 2등급 상향

#### ※ 지역안전도 진단

- 통계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현지진단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 지역안전도 진단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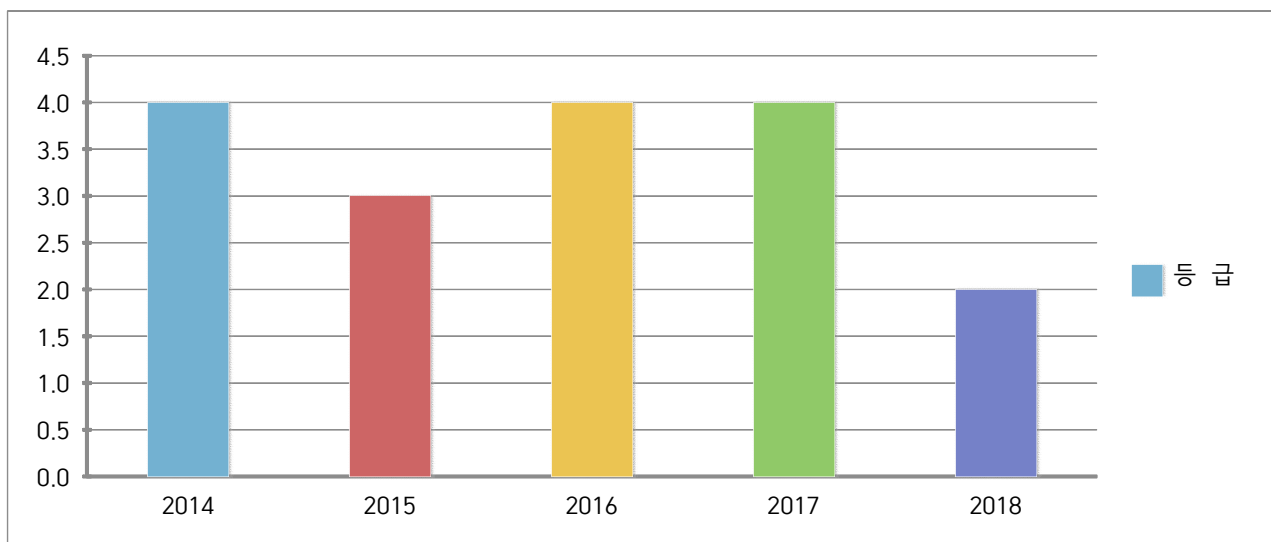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 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 안전도 진단 실시

#### ※ 분야별 진단방법

- 위험환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 방재성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대응능력 진단

###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등 급 | 4    | 3    | 4    | 4    | 2    |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2017년에 비해 재해위험요인 감소, 예방대책 추진실적 향상,  
예방시설 정비실적 향상으로 등급 2등급 상향됨

## 6) 재난 유형별 수습 부서 및 업무

| 분야별            | 재 난 유 형 별                                                                                           | 수습부서                    |
|----------------|-----------------------------------------------------------------------------------------------------|-------------------------|
| 자연<br>인적<br>재난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등                                                                   | 해 당 부 서                 |
|                | ·공연 및 행사장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 문화관광체육과                 |
|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 환경보전과                   |
|                |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작물·가축 및 관련시설 피해<br>·공장화재, 가스·유류로 인한 화재, 붕괴, 폭발 등<br>소방대상물 사고로 인한 피해<br>·전기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 기업지원과<br>생활경제과<br>농축수산과 |
|                | ·도로, 교량 등 시설물<br>·폭설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 건설과                     |
|                | ·건축물(건축과 소관), 축대, 담장등 사설시설물 붕괴<br>·민간 건축공사장 사고로 인한 피해                                               | 건축과                     |
|                | ·산림 및 공원 내 산불 사고로 인한 피해                                                                             | 공원녹지과                   |
|                | ·차량, 지하철, 열차 등 교통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 교통행정과                   |
|                | ·기타 건설공사 현장 사고로 인한 피해                                                                               | 해당부서                    |
| 국가<br>기반<br>재난 | ·에너지 분야 (전기, 석유, 가스 등)                                                                              | 생활경제과                   |
|                | ·식용수 분야 등 (다목적댐, 정수장 등)                                                                             | 안전총괄과<br>남동(수산)정수사업소    |
|                | ·보건, 전염병 분야<br>(의료서비스, 전염병, 의약품, 가축전염병 등)                                                           | 보 건 소                   |
|                | ·정보통신 분야<br>(통신시설, 통신망, 국가기간망, 주요전산시스템 등)                                                           | 홍보미디어실                  |
|                | ·교통 분야<br>(도로, 화물, 항공, 항만, 철도, 지하철 등)                                                               | 자동차관리과                  |
|                | ·산업 분야<br>(국가산업단지, 주요산업체 등)                                                                         | 기업지원과                   |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남동구 안전총괄과(담당자 :  
하성철, 전화 : 032)453-231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616호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3. 28.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3.28.~2019.04.11.
3. 공고대상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5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 소유자 미상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                                                                                                                                                                                                                                          |
|------------------|-----------------------------------------------------------------------------------------------------|------------------------------------------------------------------------------------------------------------------------------------------------------------------------------------------------------------------------------------------|
| 관<br>리<br>번<br>호 | 2019-139<b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li> <li>○ 소 유 자 : 미상</li> <li>○ 현장확인일 : 2019.03.25.</li> <li>○ 견인일 : 2019.04.11. 이후</li> <li>○ 보관장소 : 견인예정</li> <li>○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28<br/>조은프라자 앞</li> </ul>           |
|                  | 2019-155<b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li> <li>○ 소 유 자 : 미상</li> <li>○ 현장확인일 : 2019.03.25.</li> <li>○ 견인일 : 2019.04.11. 이후</li> <li>○ 보관장소 : 견인예정</li> <li>○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77<br/>소래생태공원 입구</li> </ul>    |
|                  | 2019-156<b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li> <li>○ 소 유 자 : 미상</li> <li>○ 현장확인일 : 2019.03.25.</li> <li>○ 견인일 : 2019.04.11. 이후</li> <li>○ 보관장소 : 견인예정</li> <li>○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71<br/>충청도회집 건너편 저전거 거치대</li> </ul> |
|                  | 2019-157(2대)<b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li> <li>○ 소 유 자 : 미상</li> <li>○ 현장확인일 : 2019.03.25.</li> <li>○ 견인일 : 2019.04.11. 이후</li> <li>○ 보관장소 : 견인예정</li> <li>○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77<br/>문수산식당 건너편</li> </ul>         |
|                  |                                                                                                     | 이하여백                                                                                                                                                                                                                                     |

##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 연<br>번 | 접수번호       | 차량등록번호        | 차명  | 수취인명 | 주소 | 발송일자 | 미배달사유  | 방치장소<br>(인천광역시 남동구)                         | 견인(예정)일        | 보관장소 | 비고 |
|--------|------------|---------------|-----|------|----|------|--------|---------------------------------------------|----------------|------|----|
| 1      | 2019-00139 | 번호판없음         | 이륜차 | 미상   | 미상 | 미발송  | 소유주 미상 | (논현1동 678-1) 소래역로28 조운프라자 앞                 | 2019.04.11. 이후 | 견인예정 |    |
| 1      | 2019-00155 | 번호판없음         | 이륜차 | 미상   | 미상 | 미발송  | 소유주 미상 | (논현1동) 소래로154번길 77 소래생태공원 입구                | 2019.04.11. 이후 | 견인예정 |    |
| 1      | 2019-00156 | 번호판없음         | 이륜차 | 미상   | 미상 | 미발송  | 소유주 미상 | (논현1동 111-144) 장도로 71 중정도회집 건너편 저전거 거지<br>대 | 2019.04.11. 이후 | 견인예정 |    |
| 1      | 2019-00157 | 번호판없음<br>(2대) | 이륜차 | 미상   | 미상 | 미발송  | 소유주 미상 | (논현1동 111-145) 장도로 77 문수산식당 건너편             | 2019.04.11. 이후 | 견인예정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3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3.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9. 3. 27. ~ 2019. 4. 10. (15일간)
3. 당 사 자

| 연번 |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주 | 소 재 지                         | 비고 |
|----|-------|--------------|-------|-----|-------------------------------|----|
| 1  | 일반음식점 | 2014-0200078 | 간석골주막 | 이○우 |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131번길 49, 1층 (간석동) | -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032-453-2623)
- 청문일시 : 2019. 4. 24.(수)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식품허가팀 032-453-2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41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22.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30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br>고시일   | 도로명<br>부여사유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주소<br>부여사유 | 비고 |
|---------------|-------|--------------|-------------|--------------|---------------|----|
| 별 도 열 람 (1건)  |       |              |             |              |               |    |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 폐지 사유        | 비 고           |    |
| 별 도 열 람 ( 건 ) |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42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22.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16번길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62번길 47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br>고시일   | 도로명<br>부여사유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주소<br>부여사유 | 비고 |
|--------------|-------|--------------|-------------|--------------|---------------|----|
| 별 도 열 램 (2건) |       |              |             |              |               |    |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 폐지 사유        | 비 고           |    |
| 별 도 열 램 (1건) |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43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7.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5 외 5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br>고시일   | 도로명<br>부여사유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주소<br>부여사유 | 비고  |
|--------------|-------|--------------|-------------|--------------|---------------|-----|
| 별 도 열 램 (6건) |       |              |             |              |               |     |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 폐지 사유        |               | 비 고 |
| 별 도 열 램 (7건) |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